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러 두 기

## 1. 이 안내서의 내용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음.

- 공직선거법 ..... 법
- 정치자금법 ..... 정금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정금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 규칙별지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서식 ..... 정금규칙별지서식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서식  
..... 인터넷규칙별지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
-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시·도위원회
- 선거구 선거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 관할선거구위원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관할구·시·군위원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입후보예정자

## 2.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법 및 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행정기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업무처리 시간은 법에 시간을 따로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관계법위반사례집』,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기 바람.



---

# 차 례

---

## 제1편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b>I.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개관</b> .....	<b>3</b>
1. 임기 및 선거일 / 6	
2. 후보자 등록 / 6	
3. 선거운동 / 6	
4. 선거비용 / 7	
5. 투표 및 개표 / 8	
6. 당선인 결정 / 9	
<b>II. 후보자등록</b> .....	<b>11</b>
1. 후보자등록 요건 / 14	
2.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 15	
3. 후보자등록 신청 / 28	
4. 추가등록 / 31	
5. 후보자사퇴 신고 / 31	
6. 후보자 기호결정 / 32	
7.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 32	
<b>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b> .....	<b>33</b>
1.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 36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36	
3.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39	

## 제2편 선거운동 및 각종 제한·금지 등

### I. 선거운동 ..... 43

#### 제1절 선거운동의 일반 / 45

1. 선거운동의 정의 / 45
2. 선거운동기간 / 46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48
4. 선거운동기구 / 49
5.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51
6.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 55

#### 제2절 선거운동의 방법 / 57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57
2.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 66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73
4.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76
5. 기타 선거운동방법 / 82
6.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방법 / 88

### II.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8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9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9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 94
4. 정책공약집 배부 / 9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96
6. 창당대회 등 개최와 고지제한 / 97
7. 당원집회 개최제한 / 98



- 8. 당원모집 등 금지·제한 / 100
- 9. 당사게시 선전물의 제한 / 100

### Ⅲ.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 101

-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 106
- 2.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106
- 3.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107
-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108
- 5.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110
- 6.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111
- 7.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112
- 8.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금지 / 112
- 9.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113
- 10. 확장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115
- 11.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116
- 1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 116
- 13.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금지 / 117
- 14.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 금지 / 117
- 15.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 / 117
- 16.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등 금지 / 118
- 17.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금지 / 118
- 18. 허위논평·보도금지 / 118
- 19.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제한 / 119

20.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제한 / 120
21.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120
22.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121
23.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등의 금지 / 121
24. 야간연설회 등의 제한 / 121
25. 각종 집회 등의 제한 / 122
26.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122
27.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123
28. 행렬 등의 금지 / 123
29. 호별방문의 제한 / 124
30.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 124
3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인용보도 금지 / 125
32.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 125
33. 여론조사시 의무 등 / 125
34.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128
35.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129
36. 후보자 등 비방금지 / 130
37. 의정활동 보고제한 / 130
38. 기부행위 제한·금지 / 131
39. 기부받는 행위 등 금지 / 132
40. 답례를 위한 금품제공 등 현수막 게시 금지 / 133
41.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133
42.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 / 134

#### IV.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 137

1.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139
2.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 등 / 141
3.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청 / 141
4. 선거범죄 조사 / 142
5.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 / 143
6. 자수자에 대한 특례 / 144
7.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분보호 / 145
8.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146
9.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 / 146
10.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147
11.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 148
12.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 149
13.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 150
14. 선거범의 재판기간 강행규정 / 151
15. 선거범죄의 권석재판 / 151
16.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징수 / 151

## 제3편 재외선거

### I. 재외선거 일반 ..... 157

1. 재외선거 개요 / 159
2. 재외선거 절차 / 159

###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선정 ..... 163

1. 재외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165
2. 회송참관인 신고 / 167

### III. 국외선거운동 ..... 169

#### 제1절 국외선거운동 일반 / 171

1.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 171
2.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171

#### 제2절 국외선거운동 방법 / 172

1. 언론매체 이용 국외선거운동 / 172
2.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 175
3. 기타 선거운동 / 176

## 제4편 정치자금

1. 정치자금의 의의 / 180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183
3. 예금계좌 신고 / 184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 185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 187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188
7. 선거비용의 보전 / 188
8.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의 인계 / 191

### 부 록

- ①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195
- ②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196
-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232
- ④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 313



# 제 1 편

##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I.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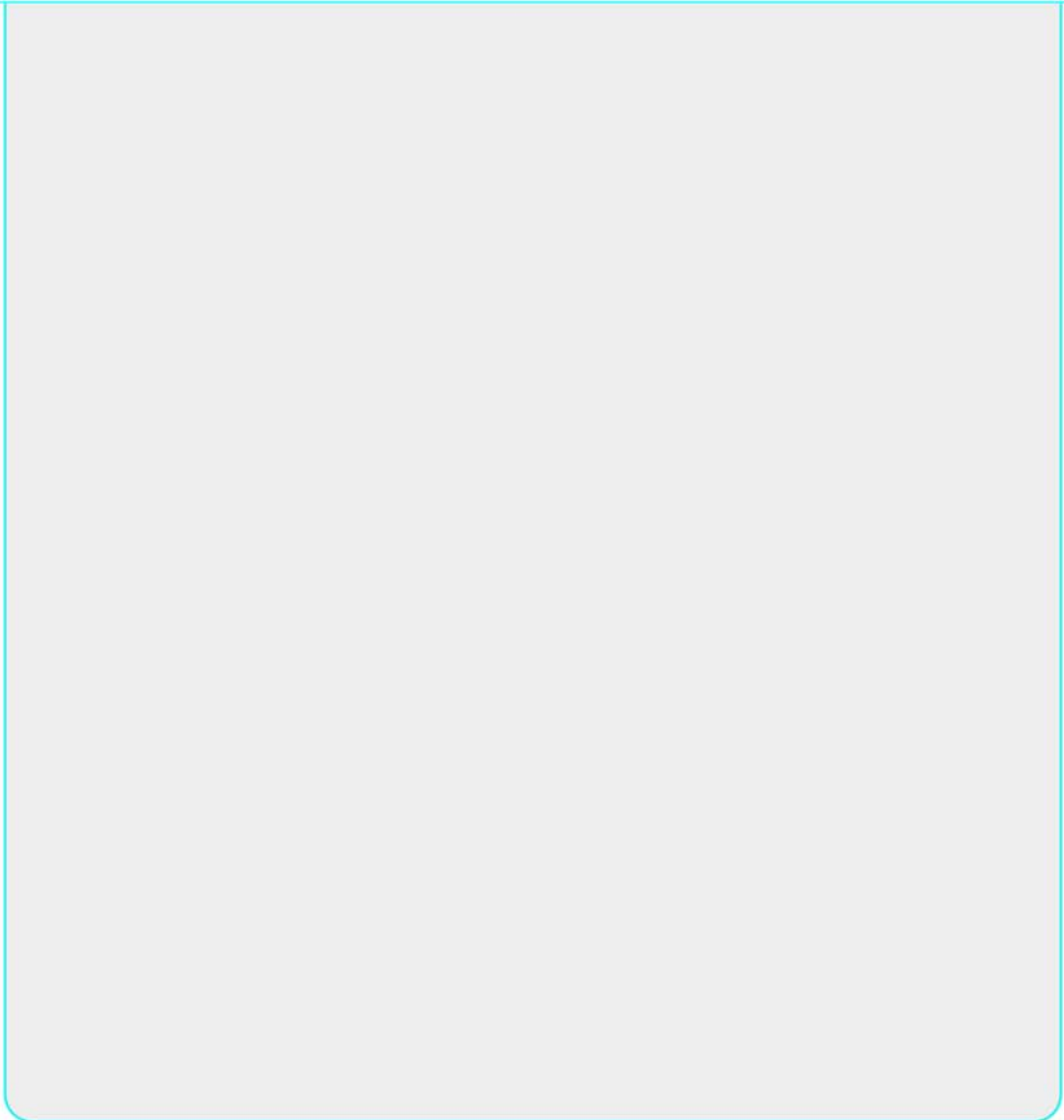
II. 후보자등록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 I.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개관





## I.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개관

구 분	주 요 일 정
2012년 4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4. 13.까지)
	예비후보자홍보를 발송수량 공고(4. 13.까지)
	예비후보자 등록(4. 23.부터)
2012년 9월	입후보제한직 사직(9. 20.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9. 20.부터)
2012년 11월	후보자등록신청(11. 25~11. 26)
	선거기간개시일(11. 27) / 선거운동기간(11. 27~12. 18)
	선거벽보 제출(11. 29.까지)
2012년 12월	재외투표소 설치·운영(12. 5~12. 10)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12. 2.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12. 6.까지)
	선상투표 및 팩시밀리 전송(12. 11~12. 1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12. 13~12. 14.까지)
	투표 및 개표(12. 19)
2013년 2월	선거비용 보전('13. 2. 27.까지)

## 1

### 임기 및 선거일

- 선거일 : 2012. 12. 19(수)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기간 : 2012. 11. 27(화)~2012. 12. 19(수) (23일간)
- 임 기 : 5년(2013. 2. 25~2018. 2. 24)

## 2

###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2. 11. 25(일)~2012. 11. 26(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기탁금액 : 3억원
- 기호결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중앙위원회에서 추천) 순으로 하며 1, 2, 3으로 표시함.

## 3

###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 2012. 11. 27(화)~2012. 12. 18(화)
-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

#### ●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2. 11. 26(월)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4

### 선거비용

- 선거비용제한액 : 55,977,000,000원

## ● 선거비용의 정의

-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

##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13. 1. 8(화)까지 (선거일후 20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 : 2013. 2. 27(수)까지 (선거일후 70일 이내)

# 5

## 투표 및 개표

### ● 투 표

- 투표시간 : 2012. 12. 19(수)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개시 :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개시
- 투표절차 :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 개 표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후 개함

- 개표절차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개함부) →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운영부) → 투표지 심사·확인·집계(심사·집계부)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 6

### 당선인 결정

- 중앙위원회 결정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자
- 국회 결정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II. 후보자등록

### ◆ 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후보자등록서류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2. 11. 24(토)까지
- 장 소 : 중앙위원회(선거종합상황실, 1층 101호)
- 대 상 :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원고,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후원회 등록 등 각종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후보자등록-선거종합상황실, 후원회 등록 및 선거비용 등-정치자금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 요 ◆

### ■ 등록요건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1972. 12. 20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
  -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간주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12. 9. 20(목)까지 그 직을 사직한 사람에 한하여 입후보 가능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 ■ 후보자등록

- 등록서류 사전 검토
  - 기 간 : 2012. 11. 24(토)까지
  - 장 소 : 중앙위원회(선거종합상황실, 1층 101호)
  - 대 상 : 등록신청서류,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원고 및 기타 입후보 예정자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 후보자등록
  - 등록기간 : 2012. 11. 25(일)~2012. 11. 26(월) [매일 09:00~18:00]
  - 접 수 처 : 중앙위원회

### ■ 기탁금 납부

- 납부금액 : 3억원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억 4천만원)을 납부
- 납부방법 : 후보자등록신청시 중앙위원회가 개설한 기탁금계좌 (농협, 301-0105-1045-71, 예금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명의로 무통장입금 후 입금표 제출

## II. 후보자등록

1

### 후보자등록 요건

#### 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법 제16조)

- (1)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1972. 12. 20. 이전 출생자) 이상의 국민(법 제16조①)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간주
- (2)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2012. 9. 20(목)까지 그 직을 사직 하여야 함(법 제53조①)
- (3)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법 제16조)

####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 선거법,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2004. 3.12, 정금법 제49조는 2005. 8. 4)전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 [부칙(2004. 3. 12)제6조, 부칙(2005. 8. 4)제5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이하의 징역·금고 : 5년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2

##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 가. 후보자 추천

(1) 정당의 후보자추천(법 제47조·제50조·제57조의2)

(가) 추천인원 : 정당마다 1인

(나) 추천방법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 정당은 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유의사항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라)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 붙임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다)]

(마) 정당추천후보자 본인승낙서 : 붙임 3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바)]

(2)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법 제48조)

(가) 추천권자 :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나) 추천인원 :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

(다) 추천방법 : 중앙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에 의하여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서 7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음.

(라)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

- 신청기간 : 2012. 10. 26(금)~11. 26(월)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전까지

※ 추천장 검인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할 수 있음.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서식 : 붙임 4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나)]

### ◆ 유의사항 ◆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됨.
-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이 무효됨).
- 추천장 서식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①”란에는 추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
-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 받을 수 있음.
-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 작성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음.

#### 나.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1)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④2호)

(가) 신고(산정)기준일 : 2011. 12. 31(전년도 12월 말일 현재)

(나) 신고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공직자윤리법 개정(2009. 2. 3)에 따라 혼인한 여성후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다) 신고서식 : 붙임 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내)]

(라)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② - 나.” 참조

※ 신고에 따른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 등록대상재산 신고시 유의사항 ◆

- 오빠와 주거(세대)를 같이 하는 미혼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오빠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며느리와 계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님.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 생모는 직계존속이므로 신고하여야 하며 재혼하여 피부양자가 아니므로 고지거부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그 소유재산은 신고대상임.
- 목장의 가축(소, 말 등), 상점의 상품, 공장의 기계, 수목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님.
-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나, 운전교습용 자동차 및 학원건물은 신고대상임.
- 공시지가, 과표 등이 없는 도로, 하천 등 그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 가격’을 기재함.
- 공원묘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상가권리금은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슈퍼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은 채권으로 간주하므로 “채권”란에 기재함.



(2)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④3호)

(가) 신고기준일 : 2012. 10. 25(후보자등록일전 1개월 현재)

(나)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 후보자 본인의 18세(1994.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 (아들 · 손자 · 외손자)

※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직계비속)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다) 신고사항

구 분	신 고 사 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집 · 소집대상자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 내용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복무분야, 계급, 입영연월일, 전역 · 소집 해제 연월일 및 전역 · 소집 해제사유
○ 현역 · 보충역 · 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 ◆ 유 의 사 항 ◆

- 신고대상자(후보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가 비공개대상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 하여야 함.
- (외)손자의 신고대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자는 (외)손자가 등재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 제출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라) 신고서의 첨부서류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마) 신고서식 : 붙임 6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바)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2 - 다.” 참조

※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 신청권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 처리절차

-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함.

- 확인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3)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법 제49조④4호)

(가)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나)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이 2011. 9.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득세 등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

(다) 신고서식 : 붙임 7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자)]

(라)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② - 라.” 참조

(마)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붙임 7-1, 붙임 7-2

(바) 납세실적증명서 발급

### [소 득 세]

신 고 대 상	후보자 본인,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 고 범 위	2007년~2011년 사이에 발생한 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함.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 급 시 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월이후(2012. 10. 25. 이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신 범	고 위	재 산 세	2008년~2012년 부과분
		종 합 부 동 산 세	2007년~2011년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발 기	급 관	재 산 세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종 합 부 동 산 세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발 급 증 명 서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li> <li>▪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li> </ul>	
발 급 시 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월이후(2012. 10. 25. 이후)	

※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 서식에 의해 발급해 주도록 요청해야 함.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연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함.
- (4)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법 제49조 ④5호)
- (가)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 (나) 신청시기 : 2012. 6. 30(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 (다)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 (라) 조회대상자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입후보예정자인 소속당원

(마)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 형의 범죄경력

※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실효된 형을 포함.

(바) 신청서식 : 붙임 8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사)]

(사) 유의사항

○ 범죄경력 조회신청시 당해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회보해야 하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 열람가능

○ 경찰청의 '전과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 작성

※ 중앙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 일괄조회

(아)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8-1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차)]

※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및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법 제49조④6호)

(가)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최종학력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붙임 9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

(나)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중에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을 말함(법 제49조④6).

### ◆ 유 의 사 항 ◆

- □□대학교를 거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 등에 굳이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기재
  -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는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을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

####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 ※ 전문번역기관 :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

(6)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 제49조①, 규칙 제20조)

※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3대에 한하여 가족사항이 나타나므로 조부모 및 손자녀(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 등 다른 직계존비속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병역·세금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직계존비속이 등재된 다른 가족(조부모의 경우에는父, 손자녀의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7)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53조①)

(가) 발급신청자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을 가졌던 자

(나)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다)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①) ◆

■ 선거일전 90일(2012. 9. 20)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대상이 아님).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예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 의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위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여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부지분 확인방법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접속 ⇨ 상단의 경영공시 중 기관별 경영공시 클릭 ⇨ '기관명'에 확인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입력 ⇨ 조회된 자료에서 기관명 클릭 ⇨ 경영공시 중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중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사직인정시점

-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명예퇴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

(8) 기탁금의 납부(법 제56조, 규칙 제24조)

(가) 납부금액 : 3억원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한 기탁금(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억 4천만원)을 납부

(나)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시

(다) 납부방법

중앙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농협, 301-0105-1045-71, 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 후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당해 금융기관의 입금표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 ◆ 기탁금 반환 및 귀속 ◆

### ■ 기탁금의 반환(법 제57조①, 규칙 제25조①)

#### ●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되, 과태료와 대집행 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중앙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반환기한 : 2013. 1. 18(선거일후 30일)까지

●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 ■ 기탁금의 국고 귀속 (법 제57조②)

● 귀속사유 : 법 제57조 제1항의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 기탁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람은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중앙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3

##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12. 11. 25(일)~11. 26(월)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 록 처 : 중앙위원회

라. 등록신청서류

(1)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 후보자등록신청서	1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나)
○ 첨부서류		
▪ 추천서·후보자 본인 승낙서 (정당추천후보자)	1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다)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바)
▪ 선거권자추천장 (무소속후보자)	추천인수를 충족하는 매수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가)
▪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	구·시·읍·면·동장 발행 ☞ 거주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함(5년이상 국내거주요건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외에 다른 직계존비속 (18세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1	구·시·읍·면·동장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병역사항 신고내용 및 금치산자선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본적)의 확인에 필요함.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 서류(해당자)	1	소속기관(소속위원회)장 발행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나)

서 류 명	수 량 (부, 통)	비 고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그 증빙서류	1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채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자) ☞ 신고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함.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	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차) (회보서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발행)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
▪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8매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경력방송원고제출서 (TV,라디오)	각 2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나)
○ 관리상 필요서류		
▪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인장의 인영신고서(정당추천후보자)	1	규칙 별지 제13호서식(기등록된 인영으로 같음할 수 있음)
▪ 후보자 이력서	1	선거관리자료용
▪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호(E-mail주소 포함)	1	업무연락용
▪ 사진(5×7cm의 천연색으로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10 매	경력방송·자료발간 및 언론제공용 ☞ 전자파일 동시 제출 (사진규격 등 - 붙임 32 <별지> 참조)

※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2) 신청서식 :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3)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부록 ② - 가.” 참조

## 마. 등록무효사유(법 제52조)

---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이 2인 이상을 추천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 ※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서식 : 붙임 10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때
    - ※ 법 제57조의2②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함.
- 사립학교의 교원
  -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함.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접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4

### 추가등록(법 제51조)

- 가. 등록사유 : 정당추천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사망한 때
- 나. 등록기한 : 2012. 12. 1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다. 신청자 : 사망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라. 등록절차 : 후보자 등록절차와 같음

## 5

### 후보자사퇴 신고(법 제54조)

-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나. 신고처 : 중앙위원회

## 다. 신고방법

- (1) 후보자 자신이 직접 중앙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 (2)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6 후보자 기호결정(법 제150조③·⑤)

가. 결정시기 : 2012. 11. 26(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후)

나. 결정기관 : 중앙위원회

## 다. 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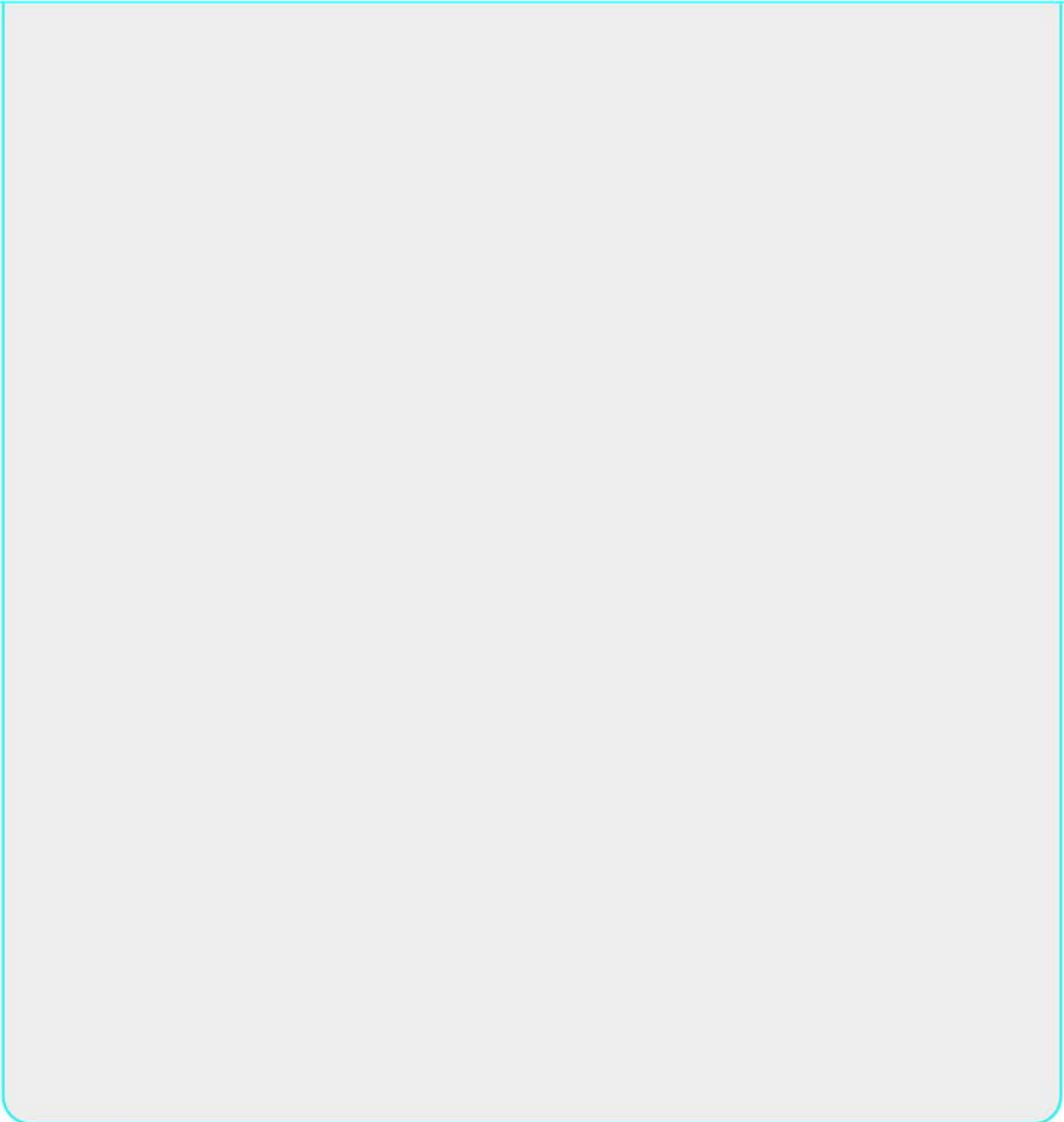
2012. 11. 26(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되,

-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 다수 의석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정당이 같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 소속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 무소속후보자 ➡ 중앙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

## 7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작성요령

◇ “부록 2” 참조

###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 ◆ 개 요 ◆

### ■ 투·개표참관인 신고

#### ● 후보자(정당)별 참관인 신고인원

투 표	일반투표소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인
참관인	부재자투표소	후보자마다 부재자투표소별 2인
개표참관인		구·시·군마다 후보자추천정당 6인, 무소속후보자 3인

#### ● 신고기한 및 신고처

구 분		신고기한	신고처
투 표	일반투표소	2012. 12. 17까지	읍·면·동위원회
참관인	부재자투표소	2012. 12. 11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
개표참관인		2012. 12. 18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

### ■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9. 20(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개표 참관인은 제외)

###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 선거인명부사본 교부(법 제46조, 규칙 제18조)

가.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나. 신청처 : 해당 구·시·군의 장

다. 신청기한 : 2012. 11. 27(선거기간개시일)까지

라. 신청수량

후보자마다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중 1종 1통(신청이 있는 때부터 24시간이내에 교부)

☞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ㄹ)]

바. 비용부담

해당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명부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 작성 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2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61조·제162조, 규칙 제88조①)

가. 신고권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나. 신고기한 및 신고처

- (1) 투표참관인 : 2012. 12. 17(선거일전 2일)까지, 읍·면·동위원회
- (2) 부재자투표참관인 : 2012. 12. 11(선거일전 8일)까지, 관할구·시·군  
위원회

※ 다만,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  
일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함.

## 다. 신고인원

- (1) 투표참관인 : 투표소별로 2인
- (2) 부재자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

## 라.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 (2)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 (3)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 (4)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9. 20(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법 제60조②).

## 마. 투표참관인 지정

- (1) 정 수 : 투표소마다 8인
- (2) 지정방법
  - (가) 신고인원수가 8인을 넘는 때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인을 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  
별로 우선 1인씩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인을 지정

- 선정·신고한 정당·후보자수가 8인에 미달하였으나, 선정·신고 인원이 8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

(나) 선정·신고 인원수가 4인에 미달하는 때

읍·면·동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바. 부재자투표참관인 지정**

- (1) 정 수 : 없음
- (2) 지정방법

선정·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자 밖에 없는 때에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사. 교체시기** : 신고후 언제든지[투표일(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투표소(부재자 투표소)에서도 교체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자. 교대참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대 참관 가능

※ 교대참관(부재자투표 참관제외)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1씩 하여야 함.

## 차. 참관요령

- (1) 투표참관인은 참관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2)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3)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3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181조, 규칙 제102조①·②)

가. 신고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나. 신고기한 : 2012. 12. 18(선거일 전일)까지

다. 신고처 : 관할구·시·군위원회

라. 신고인원 : 구·시·군마다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

※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만 선정한 경우에는 구·시·군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

마.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
- (2)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 (3)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법 제53조①)

(4)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음.

바.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사. 신고서식 : 붙임 14 [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가)]

아. 교대참관 :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대참관 가능

※ 교대참관은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하여야 함.

자. 참관요령

- (1)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시·군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3)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제 2 편

### 선거운동 및 각종 제한·금지 등

I. 선거운동

II.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III.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IV.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 I. 선거운동

- 선거기간(23일간)은 선거일전 22일부터 선거일까지임.  
: 2012. 11. 27(화) ~ 2012. 12. 19(수)
- 선거운동기간(22일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임.  
: 2012. 11. 27(화) ~ 2012. 12. 18(화)
- 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2. 11. 26)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I. 선거운동

## 제1절 선거운동의 일반

### 1 선거운동의 정의(법 제58①)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58조① 단서)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 참고
-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방문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

가. 선거운동기간 : 2012. 11. 27~12. 18(22일간)

나.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1)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2. 11. 26.까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홍보물은 2012. 11. 24(토)까지 발송 가능

-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매회 전송 시 붙임 15 [규칙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기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 후보자등록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2. 11. 26)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곧바로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선거기간개시일전(2012. 11. 26)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을 겸하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사무장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와 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에 예비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 제218조의14)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3) 선거권이 없는 자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정무직공무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5)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부재자투표 포함)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2. 9. 20(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 (7)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위 (4) 부터 (7)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8)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9)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법 제61조)

(1) 설치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2) 설치수

(가) 선거사무소 : 1개소

(나) 선거연락소 :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3) 설치장소

(가)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의 안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다)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에 설치 가능

※ 다른 정당의 사무소에는 설치할 수 없음.

(라) 구·시·군청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 당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의 관할 구역안에 설치 가능

**나. 설치(변경)신고(법 제63조①, 규칙 제28조①)**

(1) 신고자 및 신고처

구 분		신 고 자	신 고 처
선 거 사 무 소		정당, 후보자	중앙위원회
선거연락소	시 · 도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관할 시 · 도위원회
	구 · 시 · 군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시 · 도 선거연락소장	관할 구 · 시 · 군위원회

(2)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3)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가)]

**다. 선거사무소등의 간판 등(법 제61조⑥, 규칙 제27조③④)**

(1) 종 류 : 간판 · 현판 · 현수막

(2)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3) 게재사항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간판 등에 게재할 수 있음.

(4) 설치 · 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5) 설치 · 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음.

**라. 선거벽보 등 홍보물의 첩부(법 제61조⑥, 규칙 제27조⑤~⑦)**

(1) 홍보물의 종류 :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의 사진

※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2) 첩부수량(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는 부수를 말함)

(가) 선거사무소 : 각각 50매 이내

(나) 선거연락소 : 각각 30매 이내

※ 후보자 사진의 규격은 선거벽보 규격의 2배 이내이어야 하며, 선거벽보 규격의 2배라 함은 길이와 너비의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벽보 크기의 2배를 말함.

(3) 첩부장소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5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 가. 직무의 범위

(1)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 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설치권자 및 설치수

(1)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2) 설치기간 : 2012. 4. 23(선거일전 240일)부터 2013. 1. 18(선거일후 30일)까지

※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

(3) 설 치 수 : 구·시·군마다 1개소

※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개소

**다.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의 안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라. 사무소의 간판 등**

(1)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2)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3)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항 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은 게재  
할 수 없음.

(4)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음.

(5)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마. 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 (1)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시 지체없이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설치·운영중인 정당선거사무소를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당선거사무소로 전환운영 가능

### (2) 신고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3) 신고사항

(가) 설치연월일

(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다)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라)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 (4) 신고서식

(가)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 1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나) 인영신고서 : 붙임 17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 바. 소장 등의 선임

### (1) 선임인원

(가) 소 장 : 당원중에서 1인

(나) 유급사무직원 : 2인 이내

### (2)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같음함.

※ 해임·교체시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함.

## 사.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40조)

### (1) 회계책임자 선임

(가) 인 원 수 : 1인

(나)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가) 신고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나)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다) 신고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마)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19

(3)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나) 신고서식 : 선임신고 서식과 같음

(다)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4) 회계보고

(가)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나) 보고기한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현재로  
당해 선거일후 40일까지

※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의 회계보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정당선거사무소용』

참조

##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 (1) 선임인원

구 분		선임 인원수	신 고 자	신고처
선 거 사 무 소		○ 선거사무장 : 1인 ○ 선거사무원 : 102인	정당·후보자 · 선거사무장	중 앙 위 원 회
선 거 연 락 소	시 · 도	○ 선거연락소장 : 1인 ○ 선거사무원 :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수 이내 ※ 구·시·군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읍·면·동수 이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관 할 시·도 위 원 회
	구·시·군	○ 선거연락소장 : 1인 ○ 선거사무원 : 당해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안의 읍·면·동 수 이내	선거사무장, 시·도 및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관 할 구·시·군 위 원 회

- ※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수당과 실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실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일비, 식비)외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한 수를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3) 신고방법

(가) 서면으로 신고

(나)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해당자의 신분 증명서 사본 제출

(4) 신고서식 : 붙임 20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내]

#### 나. 선거사무장 등 인영신고서 제출

(1) 제출시기 : 선임 또는 교체신고시

(2) 제출처 및 제출매수

(가) 선거사무장의 인영 : 중앙위원회 18매

(나) 시·도선거연락소장 : 시·도위원회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수 + 1매

(다) 구·시·군선거연락소장 : 구·시·군위원회에 1매

(3) 신고서식 : 붙임 21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다. 표지 교부신청

(1) 교부신청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신고로 같음

(2)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가) 신청서식 : 붙임 22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내]

(나) 신청방법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기재하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표지를 발급한 관할위원회에 신청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제2절 선거운동의 방법

### I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가. 선거벽보(법 제64조, 규칙 제29조)

##### (1) 벽보의 작성

(가) 작성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나) 작성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2012. 11. 17(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공고

##### (다) 작성방법

○ 규 격 : 길이 76cm, 너비 52cm

○ 지 질 : 100g/m<sup>2</sup>이내의 종이

##### (라)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

○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

○ 경력(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2) 벽보의 제출

(가) 제출기한 : 2012. 11. 2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나) 제출장소 :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다) 제출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라) 제출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나)]

**◆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법 제64조⑤) ◆**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도 준용)

- 원 칙 :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 정정·삭제 신청
  - 사 유 :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 기 한 : 2012. 11. 29(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 방 법 : 후보자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
    - ※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서 식 : 붙임 24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라)]

(3) 벽보의 첩부

관할구·시·군위원회가 2012. 12. 2(선거벽보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첩부

(4) 벽보의 보완첩부

(가) 첩부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

(나) 첩부사유 :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

검인제도가 폐지되어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당초 첩부매수의 30%상당 매수)에서 자율적으로 첩부하되, 오손 또는 훼손된 선거벽보 위에 덧붙임.

※ 선거벽보를 당초 첩부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첩부하여서는 아니 됨.



## 나. 선거공보(법 제65조, 규칙 제30조)

### (1) 공보의 작성

(가) 작 성 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나) 작성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다) 작성방법

구 분	종 류	규 격	지질 및 중량
책 자 형 (점 자 형)	1종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16면 이내	제 한 없 음
전 단 형	1종	길이 38cm 너비 27cm 이내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 (양면 게재 가능)	

### (라) 게재사항

#### ○ 앞면 게재사항

- 책자형·전단형 :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명·선거구명과 후보자 성명
- 점자형 : 선거명·선거구명, 후보자 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기재

※ 한글이 병기되어 인쇄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한글원고 1부를  
중앙위원회에 제출

####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 후보자 10대 핵심공약과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는 e-book으로 제작하여  
선거기간 중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제출  
기한·방법 등 별도안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필수)

- 게재내용

①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②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③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 제외) 및 완납시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포함하되, 신고를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

④ 전과기록

금고이상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⑤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 국내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이하의 학력은 별도의 증명서 제출없이도 2개 이내에서 공개·게재가 가능함.

⑥ 위 ①~④(⑤는 제외)에 대한 소명자료

- 게재방법 : “부록 ② - 마.” 참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작성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만을 게재할 수 있음.

- 게재서식 : 붙임 25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타)]

## (2) 공보의 제출

### (가) 제출기한

○ 책자형 선거공보 : 2012. 12. 2(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 2012. 12. 6(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 유 의 사 항 ◆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족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2012. 12. 2)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시는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선거공보 제출마감일(2012. 12. 2)까지 제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무효(법 제52조①)

(나) 제출장소 :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다) 제출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라) 제출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내)]

### (3) 공보의 발송

(가) 발송자 : 관할 구·시·군위원회

(나) 발송방법 및 시기

- 책자형 선거공보 : 2012. 12. 5(수)까지 매세대 발송(점자형 선거공보 포함)하며, 12. 10(월)까지 부재자우편 발송
- 전단형 선거공보 : 2012. 12. 12(수)까지 매세대 발송(투표안내문 동봉)

### (4) 유의사항

-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 중앙위원회가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구분하여 공고함.
- 점자형 선거공보의 규격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점자형 선거공보에 적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에 있어 점자를 해독한 내용을 그대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도표·도형 등을 포함한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본래 작성취지를 벗어난 책자형 선거공보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
- 점자형 선거공보는 인식이 용이한 '천공방식'으로 작성
  - ※ 점자형 선거공보를 타블로이드방식(일명 물방울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음.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미게재하거나, 둘째면 외(둘째면이 부족하여 셋째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에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할 때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전단형 선거공보는 발송용봉투(30cm×23cm)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접어서 제출

#### 다. 선거공약서 (법 제66조, 규칙 제31조)

##### (1) 선거공약서 작성

- (가) 작 성 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나) 작성수량 :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 (다) 작성방법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32면 이내로 작성
- (라) 게재사항
  - 앞 면 : “선거공약서”라 표시, 선거명·후보자성명·소속정당명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게재)
  - 뒷 면 :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 명칭·주소·전화번호  
게재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 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게재
  - 후보자의 사진,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은 1면  
이내에서 게재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2) 선거공약서 배부

- (가) 배부자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 우편발송(접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특정 장소 비치·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음.

(나) 신고 및 제출

- 시 기 : 배부일 전일까지
- 신고 처 : 중앙위원회(선거공약서 2부를 신고서에 첨부)  
※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는 배부 전까지 2부 제출
- 신고·제출서식 : 붙임 26 [규칙 별지 제17의2서식의(가)]

(3) 유의사항

- 선거공약서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함.  
※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붙임 27 [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가 선거공약서를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붙임 28 [규칙 제17호의2서식의(나)])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 후보자의 학력

-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  
※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 등의 교육과정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게재하여야 함.  
※ 학교명이 개명된 경우에도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 다만, 개명된 학교명을 ( )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함.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함.  
※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선거벽보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은 본문 “제1편. II. 2. 나. (5). (나) 증명 서류제출대상 학력”의 예에 의함.

### ■ 후보자등의 사진

선거벽보에는 후보자만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나, 선거공보에는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음.

### ■ 작성규격

- 책자형 선거공보는 길이 27cm 너비 19cm의 규격 이내, 전단형 선거공보는 길이 38cm 너비 27cm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규격이내에서 크기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선거벽보(길이 76cm, 너비52cm)는 법정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선거벽보는 그 규격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첩부하지 아니함.

### ■ 인쇄물 제출

- 제출마감일 18:00를 경과하여 제출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감일 24:00를 지나서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 제출시에는 수량확인 및 운반 등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인쇄업자는 중앙위원회가 공고하는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음.
- 일부지역에 선거벽보·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첩부 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을 투표구단위로 지정하여 선거벽보등의 제출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지역을 당해 구·시·군위원회가 투표구단위로 지정함.

## ■ 위법내용에 대한 조치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중 경력·학력·학위·상벌이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한 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동 공고문 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 첨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고 공고하며, 동 공고문사본을 길이 53cm 너비 38cm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첨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첨부함.
-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상 경력 등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가 있거나 비방내용을 이유로 한 고발이 있는 때라도 선거벽보 등은 그대로 첨부·발송함.
- 무소속후보자는 선거벽보 등에 당원경력의 표시는 가능하나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때에는 위법행위의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함.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하는 것은 가능

## 2

##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 가. 신문광고(법 제69조, 규칙 제34조)

- (1) 광고주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2) 광고기간 : 2012. 11. 27~12. 17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 (3) 광고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4) 광고횟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횟수는 1회로 봄.

(5)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광고주명 및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근거 표시
- ※ 광고위치 및 색도·규격의 제한 없음.

(6) 광고절차

(가)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시기 : 광고계약을 체결하기 전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서식 : 붙임 29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나) 광고계약 체결

교부받은 인증서를 일간신문사에 제시하고 광고계약 체결

※ 광고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기간중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야 함.

※ 중앙위원회에 광고게재 신고는 하지 않음.

**나. 방송광고**(법 제70조, 규칙 제35조)

- (1) 광고주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2) 광고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3) 광고매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채널 포함)을 말함. 이하 같음.

(4) 광고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 방송횟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은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5)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6)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방송광고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7) 방송이용일시 중첩시 조정

- (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 (나) 신청순서가 같은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횟수 포함)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 (다) 신청순서와 방송시설 이용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함.

## 다. 방송연설

(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법 제71조, 규칙 제36조)

(가) 주 체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

(나) 연설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다) 연설시간 및 횟수

- 횟 수 : 후보자와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1회 이내
- 연설시간 : 1회 20분 이내

※ 방송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은 포함하되, 하나의 TV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라) 연설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 방송연설을 녹화해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되었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

(마)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보

- 지정자 : 중앙위원회
- 지정·공고 : 2012. 11. 22(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통보 : 후보자등록신청시

(바) 방송연설 신고

- 신고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신고기간 : 2012. 11. 29(후보자등록 마감일후 3일)까지
- 신고처 : 중앙위원회
- 신고내용
  -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
- 신고서식 : 붙임 30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나)]

(사) 방송연설일시 결정

- 결 정 자 : 중앙위원회
- 시 기 : 2012. 12. 1(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일시결정 방법
  - 연설일시 미중첩시 : 후보자가 신청한 일시
  - 연설일시 중첩시 :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정

◆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 연설일시 조정방법(규칙 제36조③) ◆

- 방송시설별(텔레비전, 라디오)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하여 먼저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일시를 지정함.
-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일시의 조정
  - (가) 선거일(위성방송연설은 재외투표기간 마감일)에 가까운 일자부터 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
  - (나) '가'에 의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①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
    - ②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
    - ③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
  - (다) '나'에 의한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 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 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 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함.

※ (가)·(나)의 추천방법

- 기호순에 의하여 추천순위 추천 ⇨ 추천순위에 의하여 시간대 추천  
(이 경우 추천순위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회 추천에 의하여 정함)
-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천

※ 중앙위원회가 위의 방법에 따라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

(아) 연설원 교체신고

- 신고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 시기 :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 신고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31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다)]

(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규칙 제37조)

(가)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나) 방송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다) 연설자 : 후보자

(라) 연설방송 : 연설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마)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라. 경력방송

(1)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법 제73조, 규칙 제38조)

(가)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

(나) 방송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다) 방송시간 : 후보자마다 1회 2분 이내

(라)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8회 이상

(마) 방송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은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바) 원고 작성·제출

○ 제 출 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제출기한 : 2012. 11. 26(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후보자가 경력방송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함.

○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 제출부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부

○ 작성서식 : 붙임 32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나)]

※ 텔레비전·라디오 원고의 경력란 기재시 경력을 전·현직으로 구분하여  
경력앞에 (전), (현)으로 기재 《예시 : (전) 국회의원》

### [텔레비전방송용]

- 100자 이내(구두점 기타 문장부호 포함)로 작성하되, 원고 중 직업  
(1종), 학력(1종), 경력(2종)의 자수는 각각 12자까지 작성가능

- 사진(5cm×7cm)은 최근 3개월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천연색사진[전자파일(사진규격 등 - 붙임 32 <별지> 참조) 포함]
  - ※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사진의 방영을 하지 않으며,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는 부분은 이를 방영하지 아니함.

### [라디오방송용]

- 300자 이내에서 텔레비전용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
  - ※ 원고의 자수가 법정제한자수를 넘는 때에는 넘는 부분은 방송하지 아니함.

(사)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2)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규칙 제39조)

(가) 방 송 사 : 한국방송공사의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나) 방송방법 : 중앙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다)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3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 제79조, 규칙 제43조)

#### 가. 연설·대담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은 할 수 없음.

나. 연설·대답의 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연설·대답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 연설·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임.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 만을 사용하는 연설·대답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연설·대답장소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 연설·대답 금지장소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위에 예시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허용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마. 연설·대답 방법

- (1)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 실시
- (2)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음.



## 바. 자동차 및 확성장치 등의 사용

### (1) 사용수량

구 분	연설·대담용 자 동 차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발수)	휴 대 용 확성장치
후 보 자	1대	1조(1개)	1조
시·도 및 구·시·군 선 거 연 락 소	1대	1조(1개)	1조

### (2) 차량설비 및 홍보물 등

#### (가) 자동차 설비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 (나)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 첨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는 중앙위원회에서 공고한 적정 수량이내에서 첨부

### (3) 사용제한

(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다)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당해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사. 녹음기·녹화기 사용

### (1) 녹화기의 화면 규격

(가) 시·도선거연락소 : 10m<sup>2</sup>이내

(나) 구·시·군선거연락소 : 5m<sup>2</sup>이내

※ 후보자용은 규격제한 없음.

### (2) 방송·방영 가능내용

○ 일반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 포함)방송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의 방송·방영

※ 후보자 등이 연설·대답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답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는 때에도 방송·방영 가능

## 아.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 신청

(1) 신청처 : 중앙(후보자용), 관할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선거연락소용)

(2) 신청서식 : 붙임 33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재교부신청 :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붙임 33-1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

## 4

##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가.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1조, 규칙 제44조)

#### (1) 대담·토론의 개념

(가) 대담

1인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함.

(나) 토 론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2) 개최주체 :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①)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3) 개최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4)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1인 또는 수인)

(5) 개최신고

(가) 시 기 : 개최일전 2일까지

(나) 신고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다) 신고처 : 중앙위원회 또는 개최장소 소재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라) 신고방법 :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붙임 34[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내])를 첨부하여 신고(붙임 35[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개])

(6) 초청 및 진행

(가)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함.

(다) 대담·토론회 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라)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마)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 정당·후보자 등은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언론기관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도 같음)

(7)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 대담·토론회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규칙 제45조)

### (1) 개최주체

(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나)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을 발행 하는 자를 제외함)

(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 (2) 개최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 다만,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2011. 12. 19~2012. 11. 26)까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보도 가능

### (3) 초청대상 : 후보자,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 (4) 진행방법(언론기관)

(가)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함.

(나)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되 특정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다) 대담·토론회의 참가자에게 주제발표시간, 맺음말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알려야 함.

(라)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함.

(마) 대담·토론 보도시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바)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

(5)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 제82조의2)

(1) 개최횟수 등

주 관	개 최 방 법	개 최 횟 수	초 청 대 상 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	3회 이상	후보자

(2) 개최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3) 초청대상자 선정기준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2012. 10. 28)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2. 11. 26)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

(4) 진행방법

(가)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제지,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음.

(5) 중계방송

(가)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을 하여야 함.

(나)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 방송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대상 후보자로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참석여부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2012. 11. 28)까지 참석확인서[붙임 36(선방위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불참사유서 [붙임 37 (선방위규칙 별지 제4호서식)] 를 제출해야 함.

(나)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을 하며, 불참하는 매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함.

(다) 위 (3)의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초청 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가. 현수막(법 제67조, 규칙 제32조)

- (1) 게시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 (2) 게시기간 : 2012. 11. 27부터
- (3) 게시매수 : 읍·면·동마다 1매
- (4)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제곱미터 이내
- (5) 게시방법
  - (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미리 교부한 표지(규칙 별지 제19호의3 양식)를 첨부하여 게시
    - ※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첨부하여 게시함.
  - (나)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
  - (라)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 ※ 바람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
- (6) 표지교부신청서식 : 붙임 33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붙임 33-1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나. 어깨띠 등 소품(법 제68조, 규칙 제33조)**

(1) 사용할 수 있는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2) 사용할 수 있는 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3)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
어            개            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윗    옷    (    上    衣    )	3만원 이내
마 스 코 트 ,    표 찰 · 수 기 그    밖    의    소 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법 68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법 제106조②)**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2) 기 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3) 장 소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4) 방 법 : 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법이 아닌 한 제한 없음.

(5) 금지행위

(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할 수 없음.

**라. 자동차·선박에 선전물 부착 운행(법 제91조, 규칙 제48조)**

(1) 자동차·선박 사용대수 및 선전물 첨부수량

구 분	사 용 대 수	자동차·선박에 첨부할 수 있는 수량			
		선거벽보	선 거 공 보	선거공약서	표지
자 동 차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5대 이내	5매 이내(1대당)			1매
선 박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5척 이내	10매 이내(1척당)			1매

※ 위 자동차·선박에는 후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운행할 수 없음.

(2) 표지의 교부신청

(가) 신청시기 : 선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나) 신 청 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 연락소장

(다) 신 청 처

- 선거사무소용 : 중앙위원회

- 선거연락소용 : 관할 시·도 또는 구·시·군위원회

※ 자동차 및 선박을 운행할 때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라) 신청서식 : 붙임 33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4, 규칙 제45조의3)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2) 기 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3)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4) 금지행위

(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가) 주 체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사 유 :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다) 조치방법

○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

○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요청서식 : 붙임 38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6) 후보자 등의 위법게시물 삭제 등 요청사항 통보

(가) 통보권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사유 :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다) 통보처 : 중앙위원회

(라) 통보서식 : 붙임 39 [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

(마) 조치 : 중앙위원회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함.

※ 위 (5)·(6)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7)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권자

- 위 (5)·(6)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나) 이의신청기한

위 조치요청을 받은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 (다) 이의신청 방법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국내거소신고번호)
  - 이의신청내용
- (라) 이의신청신고(접수)처 :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바.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7, 규칙 제45조의5)**

- (1) 주 체 :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 ※ 위 주체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 금지
- (2)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 (3) 기 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 (4) 내 용 :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 (5) 방 법 :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사. 선거운동용 철도무료 승차권 지급(법 제83조, 규칙 제46조)**

- (1) 기 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 (2) 수 량 : 50매
- (3) 발급신청처 :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신청
- (4) 발급신청 및 인증 서식 : 붙임 40[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5) 승차권반환 : 사퇴·사망·등록무효시
- (6) 반 환 처 : 한국철도공사

##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피해구제(법 제8조의6) ◆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신청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4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조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의 피해구제

### 반론보도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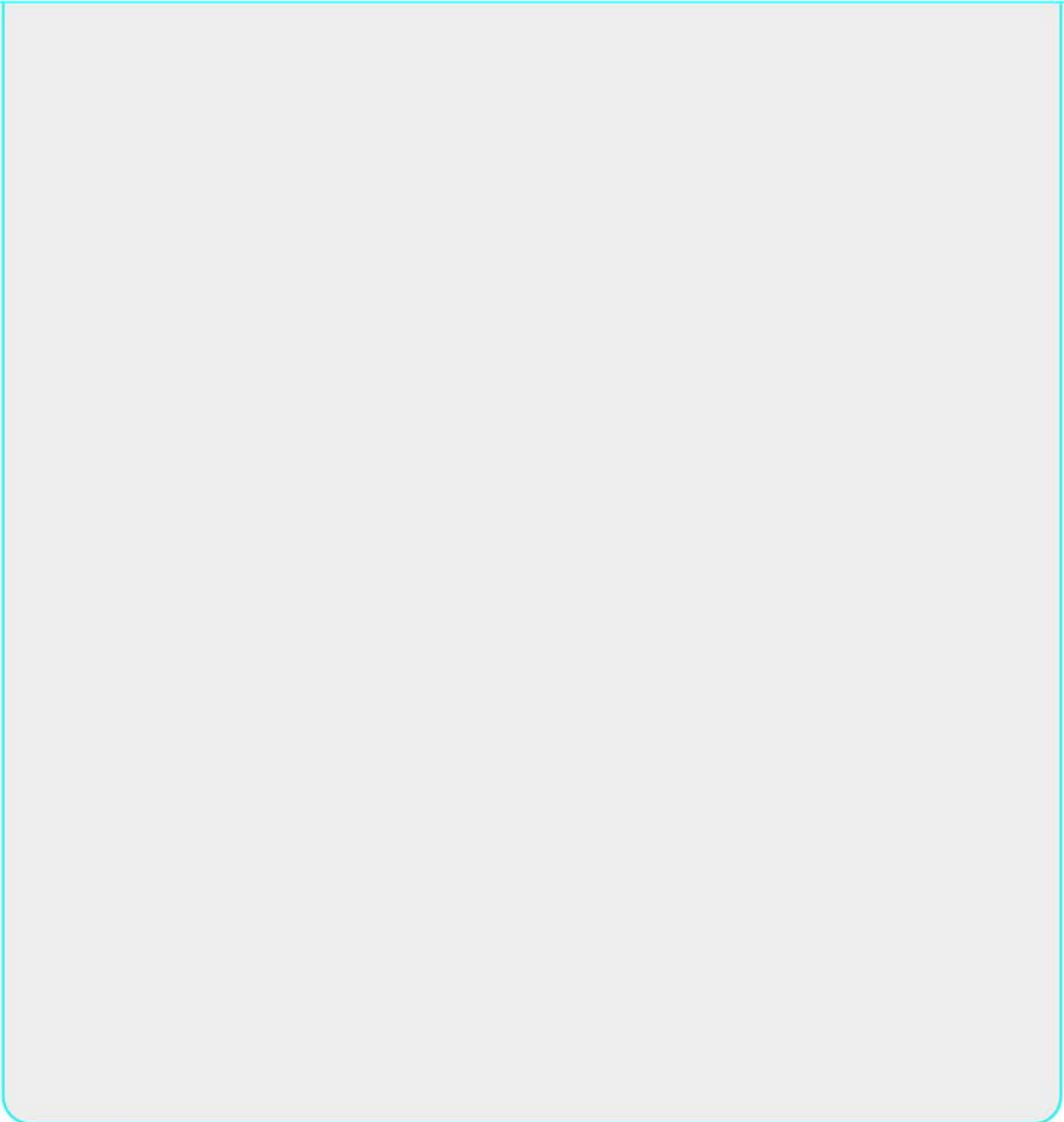
- 신청권자 :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 신청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신청사유 :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청기간 :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 신청서식 : 붙임 42 [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조치 : 즉각적인 심의를 통해 인용여부를 결정·통지
  - ※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는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One-Stop 피해구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 ※ 불공정 선거보도 사례, 이의신청 및 반론보도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iendc.go.kr) 참조

## 6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방법(법 제218조의14)

◇ “제3편 재외선거 - III. 국외선거운동” 참조

## II.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II.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12. 9. 20~11. 26(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당해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2)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3) 매 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 없음)

(5) 방 법

광고주명과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를 표시

(6) 게재내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기타 선거 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다. 광고절차

### (1) 인증서 교부신청

- (가) 신청시기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 (나) 신청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 (다) 신청서식 : 붙임 29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 (2) 일간신문사등과 광고계약 체결

## 라. 광고요금 산정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 2

### **정당·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12. 9. 1~11. 26(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에는 정당의 정당·정책의 방송연설이 금지됨.

## 나. 제한내용

### (1) 연설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 (2) 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3) 시 간 : 1회 20분 이내

(4) 방송내용

(가)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나)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다)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다. 방송연설 절차

(1) 방송연설 계약체결(중앙당 ⇔ 방송사)

(2) 방송연설 신고

(가) 신고시기 : 방송일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다) 신고서식 : 붙임 43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 라. 비용산정 및 부담

(1)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요금중 최저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연설하는 경우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함.

**3****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가. 제한기간 : 2012. 11. 27~12. 19(선거기간중)

나. 제한내용

-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 (2) 종 류 :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 (3)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 16면이내
- (4)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 (5) 게재내용
  - (가)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나)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 (1) 제출시기 : 배부전까지
- (2)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 (3)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4) 제출서식 : 붙임 44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4****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가. 주 체 :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발간횟수 : 제한없음

## 라. 게재내용 등

- (1) 정책공약집은 도서형태로 발간된 것을 의미
- (2) 자당의 정책과 선거공약
  -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3) 정책공약집 앞면에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은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4)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 마. 배부방법

- (1)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 (2)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선거연락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에서의 판매
  -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바. 정책공약집 제출

- (1) 시 기 : 발간 즉시
- (2) 제출처 : 발간 주체(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따라 중앙위원회(정당과) 또는 시·도위원회
- (3) 수 량 : 2권(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4) 제출서식 : 붙임 44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가. 제한기간 : 2012. 11. 27~12. 19(선거기간중)

나. 제한내용

(1)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2) 발행횟수

(가) 통상적인 주기에 의하되, 발행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

(나) 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봄.

(3) 게재내용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4)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 또는 민원실·마을회관·아파트입구 등 비치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기관지 제출

(1) 제출시기 : 발행 즉시

(2)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정당과

(3) 제출수량 : 2부(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4) 제출서식 : 붙임 44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가. 제한기간 : 2012. 8. 21 ~ 2012. 12. 19(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등 집회를 말함.
- ※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 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다. 제한내용

(1) 개최장소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2) 참석대상

(가) 소속당원에 한함.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제한된 인원의 내빈 초청 가능

(나)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도 참석 가능

(3) 개최장소 표지첩부

(가) 매 수 : 5매 이내

(나) 게재사항

대회명 · 개최일시 · 개최장소 · 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 ·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가. 당원집회 개최금지

- (1) 금지기간 : 2012. 11. 19~12. 19(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2) 금지내용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함.

## 나. 당원집회 개최제한

- (1) 제한기간 : 2012. 9. 20~11. 18(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 (2) 개최장소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에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3) 개최신고

- (가)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나) 신고자 : 개최당부
- (다) 신고처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
- (라) 신고서식 : 붙임 45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4)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함.

## 다.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1) 대상정당

정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2)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가. 금지기간 : 2012. 11. 27~12. 19(선거기간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가 가능함.

가. 제한기간 : 2012. 11. 27~12. 19(선거기간중)

나. 제한내용

(1)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수량·규격 제한 없음)

※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간판만 설치 가능

(2) 게시장소 : 당해 당사(사무소)의 건물이나 그 담장

(3) 게재내용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4)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해당 당사·선거대책기구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Ⅲ.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별 제한 · 금지사항

기 간	제한 · 금지사항
언 제 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li> <li>·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2·3)</li> <li>·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 등 광고 출연금지(\$86⑦)</li> <li>·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①)</li> <li>· 사조직 등의 설립 · 설치금지(\$87②)</li> <li>·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①)</li> <li>· 확장장치와 자동차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제한(\$91)</li> <li>·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93③)</li> <li>· 신문 · 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95)</li> <li>· 허위논평 · 보도금지(\$96)</li> <li>· 방송 · 신문의 불법이용금지(\$97)</li> <li>· 방송이용 선거운동 제한(\$98)</li> <li>·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등 금지(\$105)</li> <li>·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li> <li>·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 날인 금지(\$107)</li> <li>·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 · 제한 등(\$108④)</li> <li>· 후보자등의 비방금지(\$110, \$251)</li> <li>· 기부행위 상시제한(\$113~116)</li> <li>· 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117)</li> <li>· 허위사실 공표금지(\$250)</li> </ul>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6.22 ~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 후보자가 설립 · 운영하는 단체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9②)</li> <li>· 시설물설치등의 금지(\$90①)</li> <li>·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93①)</li> </ul>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8.21 ~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당 · 합당 · 개편 · 후보자선출대회 개최제한(\$140)</li> </ul>

기 간	제한 · 금지사항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2012. 9. 1~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강 · 정책 방송연설 제한(\$137의2①)</li> </ul>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2012. 9.20~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원집회 개최제한(\$141②)</li> </ul>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2012. 9.20~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 제한(\$137①1)</li> </ul>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 9.20~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 후보자명의를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li> <li>·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li> <li>· 의정활동보고 금지(\$111)</li> </ul>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10.20~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표용지 유사모형이용 또는 정당 · 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li> <li>·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li> </ul>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2.11.19~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원 단합 · 수련 · 연수 · 교육 금지(\$141①)</li> </ul>
선거기간 중 (2012.11.27~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①5~7)</li> <li>·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용 인쇄물 · 시설물의 배부 · 설치 · 게시행위금지(\$90②, \$93①)</li> <li>·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2)</li> <li>· 방송 · 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94)</li> <li>·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9)</li> <li>·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100)</li> <li>·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개최금지(\$101)</li> <li>· 야간연설회 등의 개최제한(\$102)</li> <li>· 각종 집회 등의 개최제한(\$103②~④)</li> <li>·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 ·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106①, ③)</li> <li>· 서신 · 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li> </ul>

기 간	제한·금지사항
선거기간 중 (2012.11.27~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금지(\$137)</li> <li>·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138)</li> <li>·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139)</li> <li>·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144)</li> <li>·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145)</li> </ul>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2012.12.13~12.19.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금지 (\$108①)</li> </ul>
선거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례를 위한 금품제공 등 현수막게시금지(\$118)</li> </ul>

### Ⅲ.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1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법 제84조)

가. 주 체 : 무소속후보자

나. 금지행위 :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

2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5조)

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 공무원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소속직원,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나.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대 상

(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구성원

(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

(다)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



#### (4) 금지행위

- (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조직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나) 교육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3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①)

### 가. 주 체

- (1)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직원
-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5)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
- (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나. 금지행위

- (1)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 (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다)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2)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나)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다)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②·⑦)**

가. 주 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아래 “다”의 경우 소속 공무원 포함)

나. 기간별 금지행위

- (1) 선거일전 60일(2012. 10. 20)부터 금지되는 행위
- (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 허용되는 행위 ◆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라)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함.

(2) 언제나 금지되는 행위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가.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1) 금지주체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

(다)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사)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야)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자)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 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1) 주 체 : 모든 단체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 (3) 금지행위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

## 다. 사조직 설립·설치금지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 (3)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6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8조)

### 가. 주 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 다. 금지행위 :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됨.

## 7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법 제89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가 가능함.

## 8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금지(법 제89조②)**

가. 주 체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6. 22~12. 19)

다. 금지행위

(1)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다만, 정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후원회의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할 수 있음.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6. 22~12. 19)

다. 금지행위

-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가)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나)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 이 경우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함.
  - (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을 말함.
  - (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 허용되는 행위 ◆

###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창준위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등”이라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가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으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 직무상·업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전에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 사무소를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10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법 제91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1) 법에서 정하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따른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

(3)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선박에 선거벽보, 선거공보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

**11****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92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12****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6. 22~12. 19)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 (2)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명함배부 행위(제93조제1항)는 가능함.

- 독립 배부가능 :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후보자 동행시 배부가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 배우자동행 지정자 및 후보자동행 지정자 1명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가능함.

**13****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 출연 금지(법 제93조②)**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9. 20~12. 19)

다. 금지행위

- (1)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14****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을 배부 금지(법 제93조③)**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15****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법 제94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16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등 금지(법 제9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함.

※ 「통상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말함.

17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금지(법 제96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18

**허위논평·보도금지(법 제96조②)**

가. 주 체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1)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118

## 가. 선거운동 목적 방송·신문 등 매수금지

- (1) 주 체 : 누구든지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 (3)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나. 방송·신문 등 종사자관련 매수금지

- (1) 주 체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법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다. 언론매체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행위 등 금지

### (1) 주 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  
집필·보도하는 자

###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 (3) 금지행위

위 가, 나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20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제한(법 제98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21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99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다. 금지행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2****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0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다. 금지행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3****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등의 금지(법 제101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다.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24****야간연설회 등의 제한(법 제102①~②)**

가.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나. 제한행위

(1)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

※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3)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할 수 없음.

## 25 각종 집회 등의 제한(법 제103조②~④)

가.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나. 제한행위

-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  
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2)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3)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26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9. 20~12. 19)

다.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27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법 제104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1)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횃불을 사용하는 행위

※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28

**행렬 등의 금지(법 제105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제한되는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다만,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무방함.

**29 호별방문의 제한(법 제106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행위

- (1)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언제든지)
- (2)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3)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30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법 제107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31

**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인용보도 금지(법 제108조①)**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12. 12. 13~12. 19. 18:00)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32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②)**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10. 20~12. 19)

다. 금지행위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가능함.

33

**여론조사시 의무 등(법 제108조③~⑨)**

가. 주 체 : 누구든지

## 나. 지켜야 할 행위

### (1) 여론조사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붙임 46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하여야 하며, 신고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함.

#### ◆ 신고의무 제외자 ◆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함)
  - ※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준위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 (가)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 (나)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금지행위 ◆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 (가)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4) 중앙위원회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붙임 47 [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으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 (나)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 위 (가)·(나)에 해당되어 중앙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따라야 함.
- (5)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34

###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법 제108조의2)

가. 주 체 : 언론기관 및 제8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거나 결과공표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음.

#### 나. 제한행위

- (1)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다. 비교평가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

- (1)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 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입증자료 공표
- (2)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
-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경우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

35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9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2012. 11. 27~12. 19)

### 다. 금지행위

- (1)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2) 법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1)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외

가.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나.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9. 20~12. 19)

다. 금지행위

직무상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 행위

※ 금지기간전에는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가능



-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금지기간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법 제46조(명부 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

38

## 기부행위 제한·금지(법 제112~116조)

### 가. 기부행위의 정의

#### (1) 객체(받는 자)

- (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 (2) 위반행위 :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법 제112조② 참조

### 나. 주체별 제한·금지내용

-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
  -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기부행위 금지
- (2)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와 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등

▶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 (1), (2)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 참조

### 39 기부받는 행위 등 금지(법 제117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언제든지

다.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 정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가.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나. 금지기간 : 선거일후

다. 금지행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 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 당선의 감사인사 서신으로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

- (4)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가. 주 체 : 누구든지

※ 아래 다-(2)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함.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 (1)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2)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가)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 정보”라고 표시함.
  - (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 (4)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5)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2

##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가.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공선법 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화, 문자) ※ 문자는 선관위 신고된 번호로 5회 이하	공선법 제60조의3 공선법 제82조의4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나.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다.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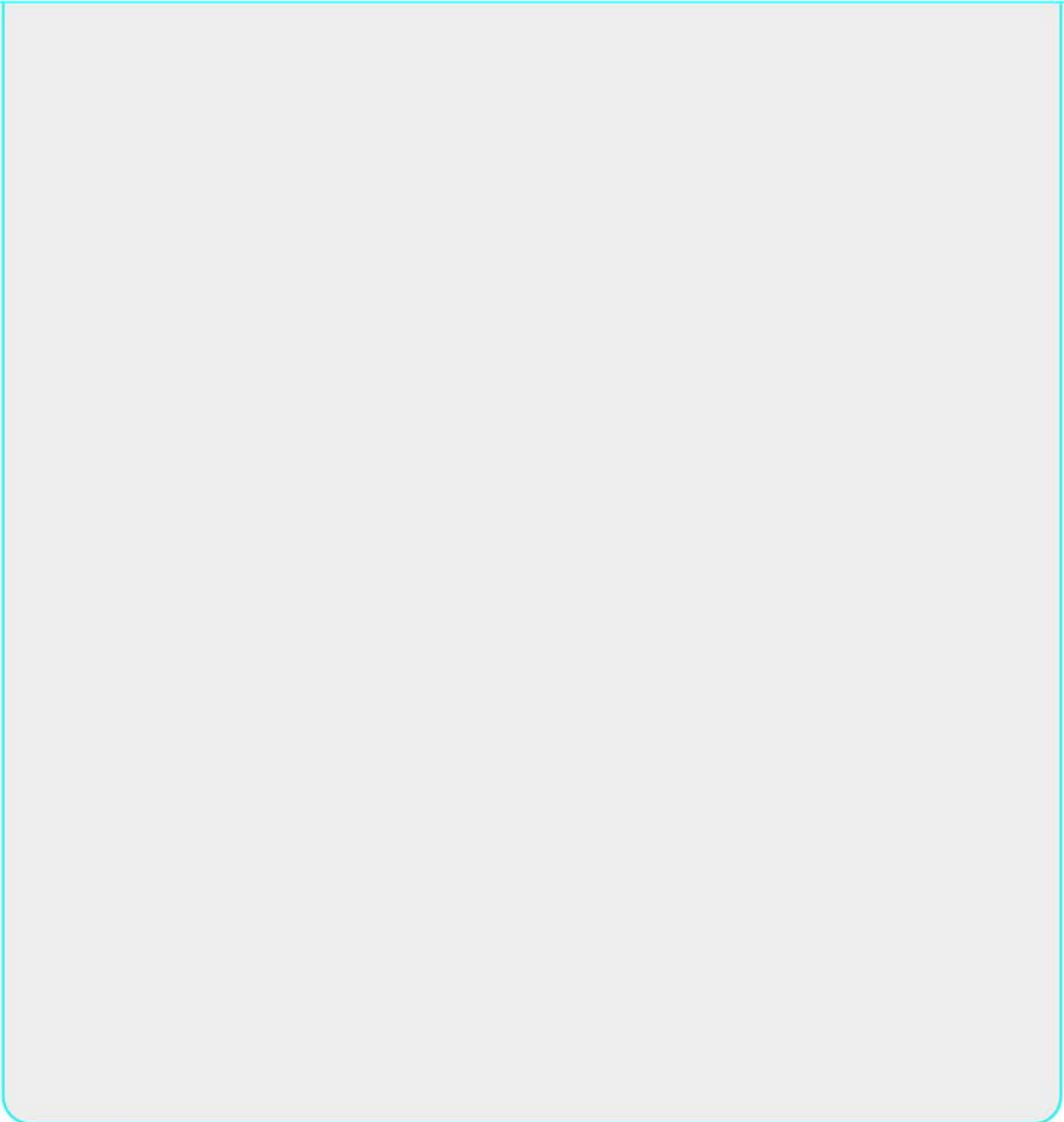
**마.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를 지정·공개하여야 함.

## IV.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 IV.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

###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법 제271조)

가.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법 제271조, 규칙 제145조①)

(1) 조치대상

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 선전물 포함),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

(2) 조치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수거·폐쇄 등 명령에 불응한 때

※ 불법시설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폐쇄 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시문을 첩부함.

(3) 조치권자 : 각급위원회

(4) 조치방법 : 규칙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나. 불법선전물 수거 공고(법 제271조②, 규칙 제145조②)

(1) 공고사유 : 불법제작·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

(2) 공 고 자 : 각급위원회

(3) 공고방법 :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다. 대 집 행(법 제271①, 규칙 제146조)

(1) 집행대상

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 선전물 포함),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

(2) 집행사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명령을 이행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3) 집행기관 : 각급위원회

(4) 집행절차

(가) 이행기한을 정해 불법시설물 등의 폐쇄를 명함(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한다는 내용 포함)

(나)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실시

(5) 비용징수

(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

※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

(나) 대집행비용과 과태료가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할 기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 중앙위원회는 선거일후 15일까지 초과하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기탁자에게 통지

- 대집행비용과 과태료 초과금액의 납부 통지를 받은 기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직접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납부

※ 기탁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는 과태료를 위(나)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징수

(6) 과태료 부과(제261조④5호)

대집행 대상 행위가 경미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을 함

## 2

###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 등(법 제271조의2)

#### 가. 요청대상

불법광고를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

#### 나. 요청사유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 “광고”라 함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준위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 제외)를 말함.

#### 다. 광고중지 요청권자 : 각급위원회

#### 라. 요청절차 등

- (1) 요청대상자에게 위법광고 중지요청
- (2)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 3

###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청(법 제272조)

#### 가. 요청대상 : 해당 우체국장

#### 나. 요청사유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이거나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

#### 다. 요청권자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 라. 우송중지요청 등

### (1)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인 때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과 함께

-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당해 우편물의 개피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

※ 우체국장이 우송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2) 우송된 때

관계우체국장에게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 4 선거범죄 조사(법 제272조의2)

가. 조사권자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위원 및 직원

나. 조사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다. 조사의 착수시기

### (1)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 (2) 후보자(경선후보자 포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후보자 등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소명을 한 때에는 그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때

## 라. 조사방법

- (1)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
- (2)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 ※ 누구든지 위원·직원의 선거범죄혐의가 있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함.
- (3) 선거범죄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장 수거
- (4) 선거범죄조사와 관련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요구
  - ※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음.
  -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
- (5)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

## 5

###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법 제272조의3)

가. 조사권자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직원

나. 조사착수시기

정보통신망 및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다. 조사절차

### (1) 판사의 사전승인

관할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으로부터 자료열람 또는 자료제공요청 여부에 대한 승인절차 이행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음.

### (2)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가) 요청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나) 요청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 포함)·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 확인자료 포함)·이용기간·이용요금

- 전화이용 관련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

## 6

###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제262조)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①·②,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①,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②의 규정에 위반해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는 제외) 및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①·②, 제257조①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7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분보호(법 제262조의2)

#### 가.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 “선거범죄”라 함은 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법 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

#### 나. 보호사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가 한 행위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다. 보호내용

신고 등의 행위와 관련해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 및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함.

※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됨.

## 8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262조의3)**

가. 주 체 :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나. 대상범죄 : 모든 선거범죄

다. 지급대상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

라. 지급액 : 최고 5억원한도내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금액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음.

## 9

**선거법위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제한(법 제135조의2)**

가. 보전하지 않는 경우

-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 그 비용
- (2)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선거와 관련하여 법 또는 정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비용의 2배 해당액
- (3)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법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 해당액



## 나. 보전을 유예하는 경우

### (1) 조 건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법 또는 정금법 제49조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우

### (2) 시 기 : 확정판결시까지

### (3) 금 액 :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4) 판결확정시 보전유예 선거비용 처리

(가) 유죄확정시 : 20일 이내에 국가에 납입

(나) 무죄확정시 : 보전비용을 지급받을 당해 후보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전을 유예한 금액을 지급

※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때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10

##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법 제265조의2)

### 가. 반환대상 범죄

- (1)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2)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3) 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나. 반환대상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과 낙선자로서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다. 반환금액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

#### 라. 반환기한

반환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납부

### 11

####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법 제10조의2, 규칙 제2조의2)

가. 설 치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나. 운영기간 : 상시

#### 다. 구성원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

※ 선거일 전 60일(2012. 10. 20)부터 선거일 후 10일(2012. 12. 29)까지는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라. 위촉방법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위촉

#### 마. 운 영

- (1)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함.

(2) 해 축

- (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 (다) 임무수행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 (라) 선거부정감시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 (마)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12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법 제10조의3, 규칙 제2조의3)**

가. 설 치 : 중앙 및 시·도위원회

나. 운영기간 : 상시(시·도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구성원수 :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구성

- (1) 중앙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상시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음.
- (2) 시·도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

## 가.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함.

나. 신청권자 :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다. 신청처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라. 재정신청 대상범죄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위반죄

## 마. 재정신청기한

- (1)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2)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와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일 전날까지

## 바. 재정신청의 효력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결정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14

**선거법의 재판기간 강행규정(법 제270조)**

선거법과 그 공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반드시 선고하여야 함.

15

**선거범죄의 결석재판(법 제270조의2)**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6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261조⑥, 규칙 제143조)****가. 부과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1)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자
- (2) 법 제230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료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 (3)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료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임.

## 나. 부과금액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 상한은 3천만원

### ◆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

(1)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법 제261조⑥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2)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⑥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⑥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

### (1) 제공받은 가액의 5배 또는 10배

법 §261⑥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

-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 (2) 제공받은 가액의 2배 또는 5배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261⑥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

### (3) 제공받은 가액 또는 2배

위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261⑥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

※ 부가기준액 감경기준 :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가기준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음.

## 다. 징수절차

(1) 부과권자 : 당해 위원회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나) 당사자는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함.

※ 사전통지는 당사자의 성명·주소,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기한,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함.

(3)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4)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시 부과금액의 20/100 경감

## 라. 통 지

위반사실, 이의제기방법·기한,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신청

마. 징수방법 : 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그 위반자로부터 징수

## 바. 납 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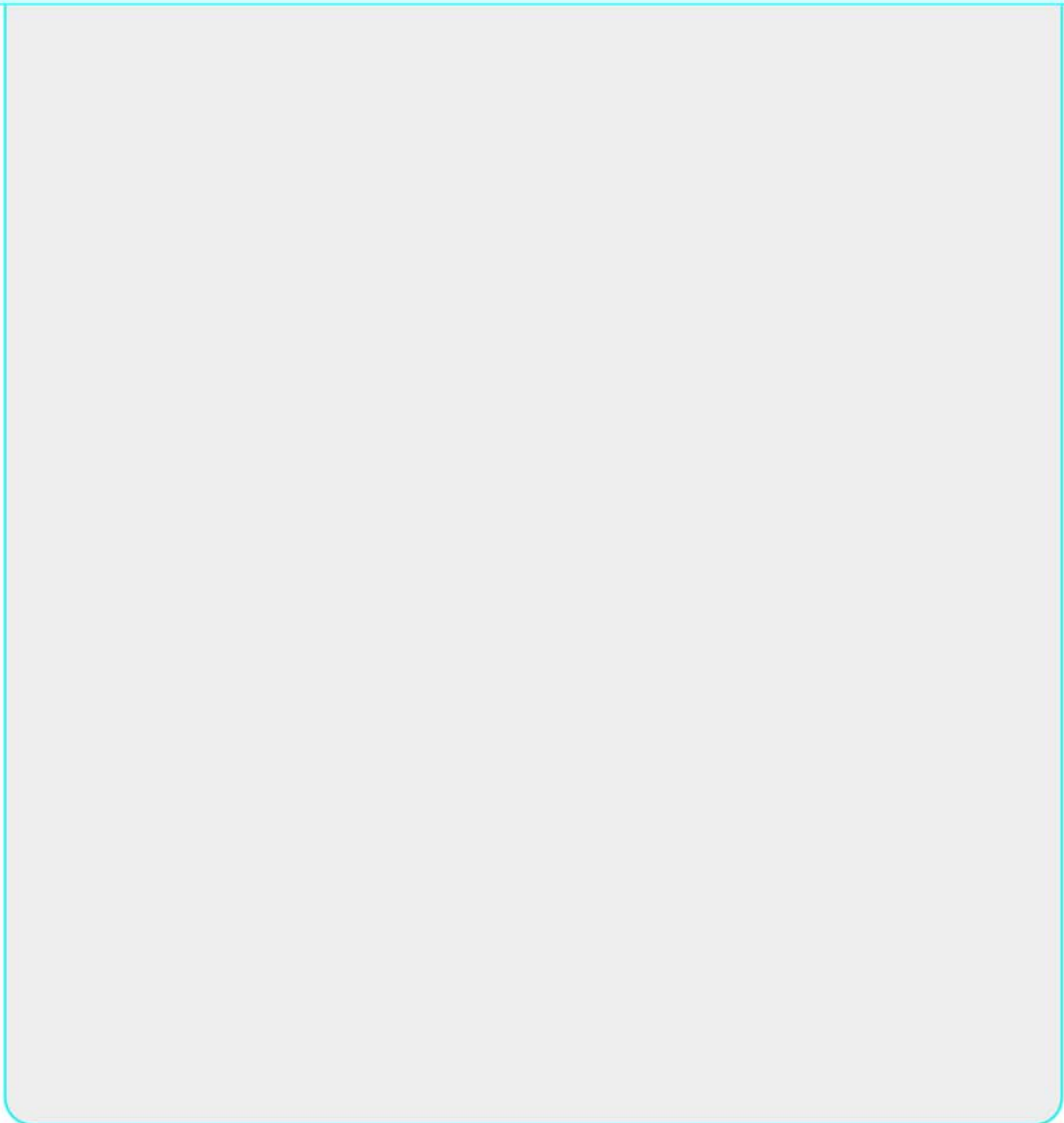
# 제 3 편

## 재 외 선 거

- I. 재외선거 일반
-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선정
- III. 국외선거운동



## I. 재외선거 일반





# I. 재외선거 일반

## 1

### 재외선거 개요

#### 가. 재외선거의 개념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선거에 참여하여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 나. 재외선거권자

- (1)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2)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다. 재외선거인등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등”이라 함.

## 2

### 재외선거 절차

#### 가.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법 제218조의4·5, 규칙 제136조의4)

(1) 기 간 : 2012. 7. 22~10. 20(91일간)

(2) 국외부재자 신고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의 장에게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우편신고 포함) 또는 전자우편(구·시·군의 장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으로 신고하되,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에 신고

(3)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가) 공관을 직접 방문(어느 공관이나 가능, 우편신청 불가)하여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면서 신청

- (나) 공관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여권 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면서 신청
-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 여권사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나. 명부작성**(법 제218조의8·9, 규칙 제136조의8·9)

- (1) 작성기간 : 2012. 10. 31~11. 9(10일간)
- (2) 작성권자
  - (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구·시·군의 장
  - (나) 재외선거인명부 : 중앙위원회

**다. 명부열람**(법 제218조의10, 규칙 제136조의10)

- (1) 열람기간 : 2012. 11. 10~11. 14(5일간)
- (2) 열람방법
  - (가) 인터넷 열람 : 중앙위원회, 구·시·군청 홈페이지
  - (나) 공관 명부 조회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라.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법 제218조의11, 규칙 제136조의10)

- (1)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명부 열람기간 중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 작성권자에게 이의신청
- (2) 불복신청 :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

마. 명부 확정(법 제218조의13) : 2012. 11. 19(선거일전 30일에)

#### 바. 재외투표

(1) 재외투표소 설치·운영(법 제218조의17, 규칙 제136조의15)

재외위원회가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함.

(2) 투표용지 제공 방법(법 제218조의18, 규칙 제136조의17)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함.

(3)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법 제218조의19, 규칙 제136조의21)

(가) 재외선거인등은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음.

(나) 재외위원회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되, 다른 위원의 자발적 참여 가능

(4) 재외투표기간(법 제218조의17, 규칙 제136조의15)

2012. 12. 5~12. 10(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재외위원회가 정하는  
기간(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5) 재외투표 참관(법 제218조의20, 규칙 제136조의22)

(가)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인을 참관인으로  
추천(2012. 12. 2.까지)

(나)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선정

사. 재외선거 개표(법 제218조의24, 규칙 제136조의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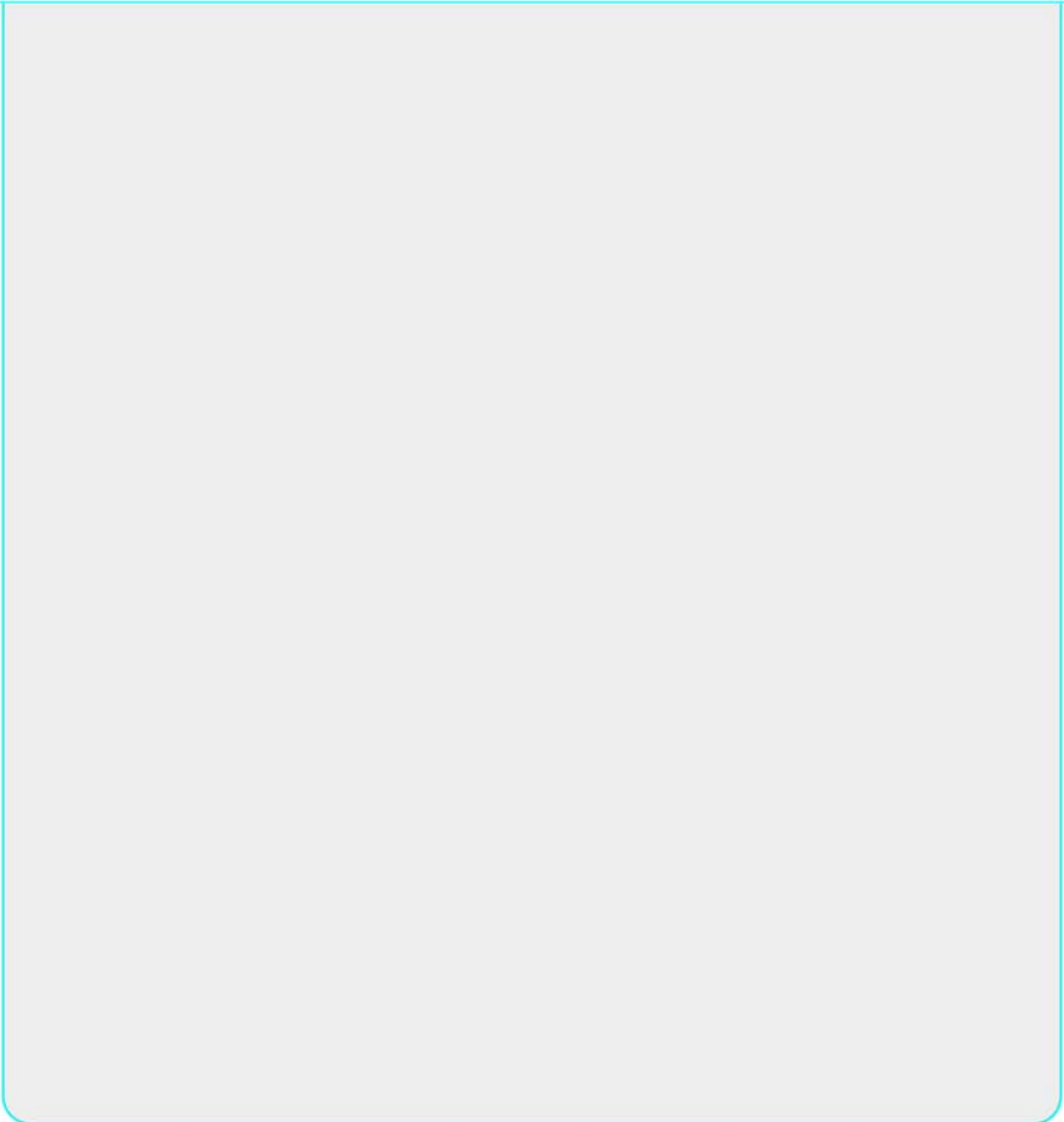
- (1) 재외투표 접수 : 구·시·군위원회
- (2) 접수 마감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
- (3) 개표절차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재외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국내 부재자투표 개표 절차에 준함)

※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외위원회가 개표관리함.



## Ⅱ. 재외투표참관인 등 선정





## II. 재외투표참관인 등 선정

1

**재외투표참관인 선정·신고(법 제218조의20, 규칙 제136조의22)**

가. 신고권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12. 12. 2까지

다. 신고인원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재외투표소별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 중 2인

라. 신고처 : 재외위원회

※ 신고기한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해 온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간주, 즉시 해당 공관에 신고내역을 통지함.

마. 신고방법 : 투표참관인 신고서[붙임 48(규칙 별지 제51호식의(가))]를 국제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

### ◆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법 제218조의20②, 제161조⑦)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각 호 해당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법 제53조① 각 호 해당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

바. 투표참관인 교체 등

- (1)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재외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재외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20③).

- (2)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법 제218조의20⑥).

#### 사. 투표참관 방법(법 제218조의20, 규칙 제136조의22)

투표참관인은 재외위원회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재외투표소내 참관인석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상황, 투표상황, 재외투표 인계·인수 상황 등을 참관함.

#### 아. 투표참관인의 권한과 의무

- (1) 투표참관인은 선거인의 본인여부 확인상황, 투표상황 등을 참관할 수 있음.
- (2)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책임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3) 투표참관인은 재외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4) 참관 도중에 재외선거인들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재외투표사무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5)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자. 수당의 지급(규칙 제90조)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1일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이내로 함.

## 가. 회송참관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인계한 재외투표 외교행낭의 회송용봉투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참관함.

## 나. 회송참관인 신고

- (1) 신고권자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 (2) 신고기한 : 2012. 12. 5까지(선거일 전 14일)
- (3) 신고인원 : 정당별 2인
- (4) 신고처 : 중앙위원회(재외선거관리과)
- (5) 신고방법 : [붙임 49(규칙 별지 제51호식의(가))]에 의한 신고서를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함.

## ◆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법 제218조의30①, 제161조⑦)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8조① 각 호 해당자)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법 제53조① 각 호 해당자)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다. 회송기간 : 2012. 12. 11~12. 18

라. 참관장소 :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인천소재)

## 마. 회송참관인 교체 등

신고한 회송참관인은 언제든지 중앙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회송기간 중에는 회송장소에서도 교체신고할 수 있음.

**바. 회송참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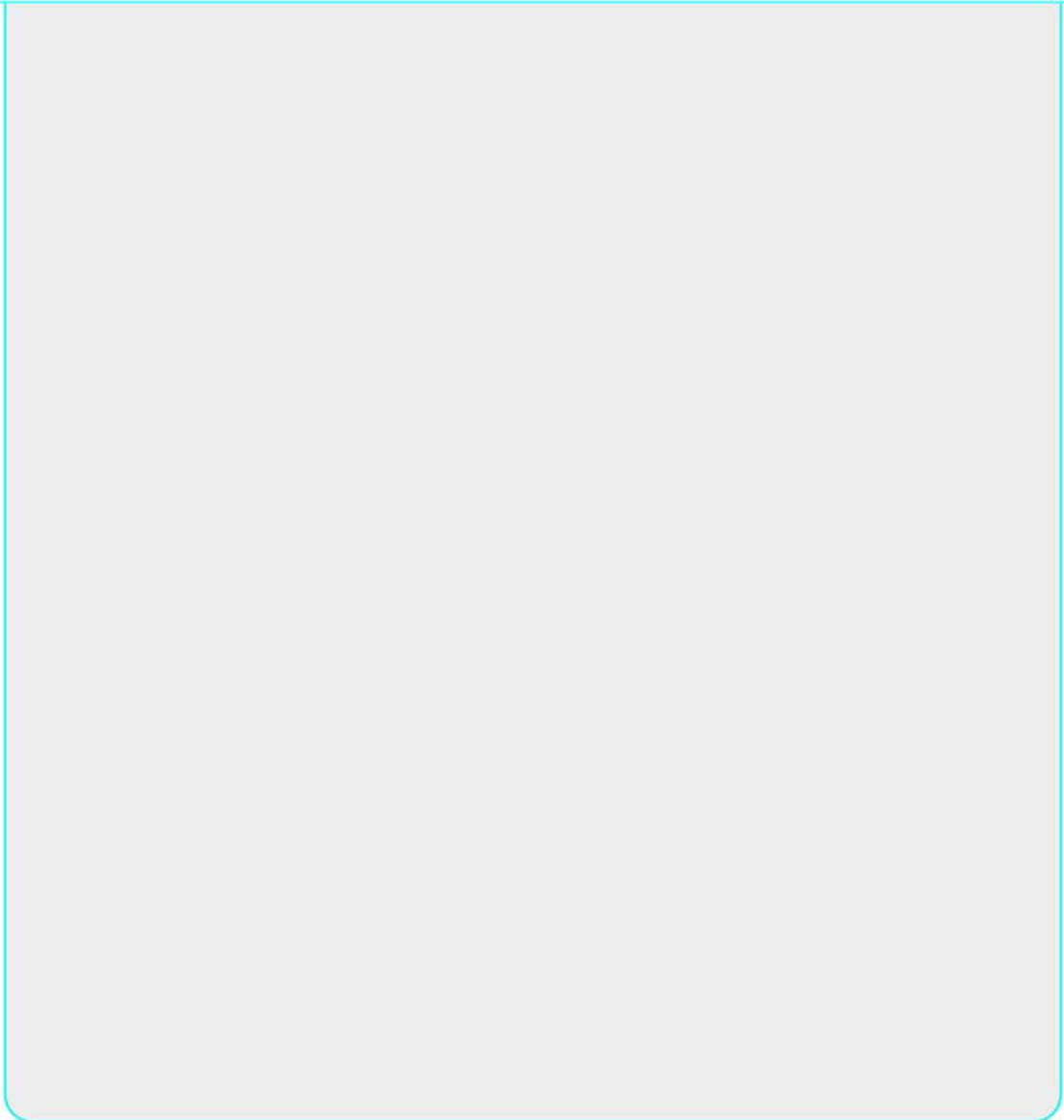
회송참관인은 중앙위원회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회송 장소내 참관인석에서 재외투표 인수·인계 과정 등을 참관함.

**사. 수당의 지급(규칙 제90조)**

회송참관인의 수당은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이내로 함.

※ 국제물류센터까지의 여비는 실비 지급

### Ⅲ. 국외선거운동







## Ⅲ. 국외선거운동

### 제1절 국외선거운동 일반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1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선거일 제외)

법 제218조의14① 제1호, 법 제59조 제2호·제3호 : 46~47쪽 참조

#### 2 선거운동기간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①)

나. 정당 또는 후보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1)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이하 이 편에서 '위성방송광고'라 함. 법 제218조의14①, 법 제70조)
- (2)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이하 이 편에서 '위성방송연설'이라 함. 법 제218조의14①, 법 제71조)
- (3)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218조의14①, 법 제82조의7)
- (4)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법 제218조의14④)

## 제2절 국외선거운동 방법

### 1

### 언론매체 이용 국외선거운동

#### 가. 위성방송광고(법 제218조의14, 법 제70조)

(1) 광고주체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2) 광고기간 : 2012. 11. 27 ~ 12. 18(선거운동기간중)

(3) 방송매체 : 위성방송시설(텔레비전 및 라디오)

※ 위성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함.

(4) 광고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위성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 방송광고 횟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위성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5)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6) 광고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방송광고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7) 위성방송시설이용일시 중첩시 조정

(가) 위성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나)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위성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횟수 포함)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다) 신청순서와 위성방송시설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함.

**나. 위성방송연설(법 제218조의14, 법 제71조)**

- (1) 연설기간 : 2012. 11. 27~12. 18(선거운동기간중)
- (2) 방송매체 : 위성방송시설(텔레비전 및 라디오)
- (3) 연설 횟수 등

연 설 자	연설시간 (1회)	매체별 연설 횟수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각각)	20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시설별 각 5회 이내

※ 방송연설 횟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위성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4) 연설내용

- (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나) 연설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방영할 수 없음.
- (다)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만,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해 방송되었던 방송연설을 방영하는 것은 가능함.

(5) 위성방송연설절차

- (가) 위성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통지
  - 지 정 자 : 중앙위원회
  - 지정·공고 : 2012. 11. 22(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통 지 : 후보자등록신청시

(나) 위성방송연설 신청

- 신청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 신청기한 : 2012. 11. 29(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내용 : 이용할 방송시설명 · 이용일시 · 연설할 사람의 성명 · 소요시간 · 이용방법 등

※ 중앙위원회가 지정 · 공고한 방송시설 · 일정에 한함.

- 신청서식 : 붙임 50[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나)]

(다) 위성방송연설일시 결정

- 결정자 : 중앙위원회
- 시기 : 2012. 12. 1(위성방송 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일시결정 방법
  - 연설일시 미중첩시 : 후보자가 신청한 일시
  - 연설일시 중첩시 :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정(63쪽 참조)

(라) 위성방송연설원 교체신고

- 신고자 :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 시기 :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 신고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51[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다)]

### 가.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의 제출(법 제218조의14, 규칙 제136조의13)

(1) 제출자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

(2) 제출처 : 중앙위원회

(3) 제출기한 : 후보자등록신청시

(4) 제출서식 : 붙임 52[규칙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

※ 출력된 원고와 그 전자적 파일(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규격 : 길이 30cm 너비 21cm 이내, 2면

(6) 내용

(가) 1면에는 붙임 25[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태)]에 따른 후보자정보를 기재함.

(나) 2면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 나. 정당·후보자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1) 작성·제공자 : 중앙위원회

(2) 작성방법 : 붙임 53[규칙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내)]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 순위로 작성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자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면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하며, 2면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로 작성함.

(3) 제공방법

(가) 공관 게시판 게시

(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함)

3

**기타 선거운동**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 87쪽 참조

# 제 4 편

## 정 치 자 금

정치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간·배부하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실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치자금의 의의
2.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3. 예금계좌 신고
4.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6.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7. 선거비용의 보전
8.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의 인계





## ◆ 개 요 ◆

### ■ 선거비용의 제한 및 수입·지출

####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

- 산정방법 :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
- 공고시기 : 2012. 4. 13(금)
- 선거비용제한액 : 55,977,000,000원

####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중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는 2013. 1. 28(선거일후 4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

### ■ 선거비용의 보전

#### ● 보전요건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 보전청구

- 청구기한 : 2013. 1. 8(화)까지
- 청구처 : 중앙위원회(선거연락소는 관할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 선거비용 보전 : 2013. 2. 27(수)까지

### 가. 개 요

-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 창준위를 포함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법에서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과 그 밖의 모든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양분됨.
- (3) 이와 관련하여 정금법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데 있어서 그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선거비용

- (1) 선거비용의 정의(법 제119조)
  - (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및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하며, 이하 선거비용의 정의에서 같음)가 부담하는 비용

- (나)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마) 상기 (다) 및 (라)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다) 또는 (라)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법 제120조, 제218조의15)
- (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나)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 정당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 당내경선운동방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다)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 (마)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법 제91조의 자동차·선박 포함)의 운영비용
  - (사)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야)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 다음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
  - (자)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기타 송금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
  - (차)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
- (3)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법 제121조, 제122조)
- (가) 산정방법 :  $\text{인구수} \times 950\text{원} + \{(\text{인구수} \times 950\text{원}) \times 15.9\%\}$ 
    - ※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함
  - (나) 공고시기 : 2012. 4. 13(금)
  - (다) 선거비용제한액 : 55,977,000,000원

## 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1) 정치자금중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 때마다 ‘선거비용’ 과목과 별도로 구분하여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회계장부를 기재하여야 함.
-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일지라도 선거일 후 보전하지 않음.

## 2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제34조)

#### 가. 회계책임자 선임

- (1) 인 원 수 : 1인
- (2)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나. 회계책임자 선임(겸임)신고

- (1) 신고자 : 정당 또는 후보자(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장)
  - ※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함.
- (2) 신고시기
  - (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후보자등록 신청시
    -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봄.
  - (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 (3) 신고처
  - (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중앙위원회
  - (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관할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4) 신고서식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5) 신고시 붙임서류

(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예금통장 사본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 붙임 19

(다)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 붙임 54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예비)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6)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뜻을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1) 변경신고 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2) 신고서식 :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3) 신고시 붙임서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55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3

#### 예금계좌 신고(정금법 제34조·제36조, 정금규칙 제34조)

가. 신고자·신고처 : 회계책임자 신고와 같음.

나. 신고시기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 다. 신고방법

(1) 예금계좌신고는 회계책임자 신고시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신고[붙임 56 (정금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2)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4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정금법 제36조·제40조, 정금규칙 제35조)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 목적의 자산(차입금 포함), 국고보조금 등 정당의 정치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 (1) 선거비용  
(2)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 선거사무소 유지비등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정치활동비용으로 수입·지출처리하여야 함.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 (1) 수입·지출담당자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임.

※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는 그 위임범위내에서 지출 가능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별도의 서면 위임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2)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3) 정치자금은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계정, 후보자의 자산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목, 선거비용외 정치자금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 보조금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보조금외는 당비·기탁금 등을, 후보자의 자산은 후보자의 자산과 후보자의 차입금 등을, 후원회 기부금은 당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말함.
- (4)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5) 회계책임자가 위 (4)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 라.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 (1) 보고의무자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
- ※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책임자 포함
- (2) 보고기한 : 선거일후 20일(1. 8) 현재로 선거일후 40일(1. 28)까지
- (3) 보고내용 :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 참조



**마.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정금법 제44조)**

(1) 회계장부 등의 인계

(가) 시 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없이

(나)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에게

(다) 인계서류 :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2) 회계장부 등의 보존

(가) 보존기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나) 위탁보존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

**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정금법 제52조, 정금규칙 제45조)**

**가. 조사기관** : 각급 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나. 조사시기**

(1) 정치자금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2)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

**다. 조사 방법**

(1) 질문·조사

(2) 자료제출 요구

(3)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4) 증거물품 수거

(5) 동행 및 출석요구

**6****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정금법 제42조, 정금규칙 제41조)**

가. 회계보고 공고 : 2013. 2. 4(월)이내 공고

나.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 2013. 5. 6(월) (공고일부터 3월간)

(1) 열람대상

(가) 재산명세서

(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

(2) 사본교부대상

(가) 재산명세서

(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제외)

다.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권자 : 누구든지

**7****선거비용의 보전(법 제122조의2)**

가. 보전대상 비용

후보자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함

나. 보전금액

중앙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내에서 보전

## 다. 보전요건

-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라. 보전하지 아니하는 비용

-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2) 정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내용
- (3)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 (4)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5)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 (8) 청구금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9)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 (11)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12)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13) 정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14) 그 밖에 위 (1)~(13)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 마. 보전청구

- (1) 청구권자 : 후보자
- (2) 청구기한 : 2013 1. 8(화)까지
- (3)청 구 처
  - (가) 선거사무소 : 중앙위원회
  - (나) 선거연락소 : 관할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 (4) 청구방법 : 서면에 의함.

### 가. 인계대상자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반환·보전 받은 무소속 후보자

### 나. 인계대상비용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보전비용에서 후보자의 자산 또는 차입금으로 지출한 기탁금 또는 정치자금(선거비용+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공제한 금액

※ 인계하여야 할 기탁금 또는 보전비용의 산출방법은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 다. 인계처 :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

### 라. 인계시기 및 인계·인수서 제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계하고, 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붙임 57 (정금규칙 별지 제50호서식)]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계대상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인계할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인계·인수서를 제출하되, 인수자를 생략하여 제출함

☞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금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항제5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48조(감독 의무 해태 죄 등) 제4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부 록

- ①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②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 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 다.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 라.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마.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서식
- ③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④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12. 9. 1(일)부터 2012.11.26(수)까지	정강·정책 방송연설 ※ 연설신고 : 방송일전 3일까지신고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12.11.18(일)까지	당원집회 신고	정당 → 관할구·시·군위원회
2012. 9.20(목)부터 2012.11.26(월)까지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전까지	중앙당 → 중앙위원회
2012.10.26(금)부터 2012.11.26(월)까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중앙위원회 → 무소속 후보자
2012.11.25(일)부터 2012.11.26(월)까지	후보자등록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후보자 → 중앙위원회
2012.11.26(월)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정당·후보자 →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후 ~ 12. 18(화)까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변경 신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선임(해임)·교체 신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 신고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등 표지 교부	정당·후보자
	후보자 방송연설 신고<방송일전 3일까지>	정당·후보자
2012.11.27(화)부터 2012.12.19(수)까지	정강·정책홍보물 제출	중앙당 → 중앙위원회 관할구·시·군위원회
	정당기관지 제출	
2012.11.29(목)까지	선거벽보 제출	정당·후보자
2012.12. 2(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접자형 포함) 제출	정당·후보자
2012.12. 6(목)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정당·후보자
2012.12.11(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2012.12.17(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2012.12.18(화)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2012.12.19(수)	투표·개표	
2013. 1. 8(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정당·후보자
2013. 1.28(월)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회계책임자
2013. 2.27(수)까지	선거비용보전	정당·후보자에게

## 2 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 (1) 작성예시

###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선 거 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홍길동 (한자 : 洪吉童)
4. 주민등록번호 : 5□0831-1234567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구 △△호 □□  
(02) 123-4567, 010-1234-5678]
6. 직 업 : 정당인
7.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8. 경 력 : (전) 제18대 국회의원  
(현) 주식회사 ○○○ 대표이사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2년 11월 일  
신청인 후보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1통(○○매)
- (2) 후보자본인승낙서(정당추천 후보자에 한함) 1통
-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 (5) 주민등록표 초본
- (6)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통
- (7)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1통
- (8)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1통
- (9)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 (10)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통
- (11) 인영신고서 ○매
- (12) 사진 10매

(2)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2.소속정당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li> </ul>
“3. 성 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li> <li>○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결정통보)를 받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하여야 함.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후보자(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li> </ul> </li> </ul>
“4. 주민등록번호”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li> <li>○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재</li> </ul>
“5. 주 소”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함</li> <li>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되, ‘지번 주소’병기 가능</li> </ul> </li> </ul>
“6. 직 업”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정당인, ○○회사 대표 등</li> </ul> </li> </ul>
“7. 학 력”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은 정규학력에 관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명”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외국학력의 경우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li> <li>※ 외국학력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문도 함께 제출</li> <li>※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기재’로 기재할 수 있음)</li> </ul> </li> </ul>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증명서”의 제출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 자료 포함) 및 후보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했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li> <li>☞ ○○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 등에 ○○대학교 졸업이하 학력만 게재하고자 하는 때 ⇒ 후보자등록신청시 ○○대학교의 학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됨(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력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li> </ul>
“8. 경 력”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으로 표시</li> </ul>
“신 청 인”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li> </ul>

## 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 (1) 작성 예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록의 무자	① 성명	(한글) 홍길동	②소속정당	□□□당	③선거명	제18대 대통령선거
		(한자) 洪吉童	④생년월일 (성별)	195□. 8. 31 ( 남 )	⑤선거구명	
후 보 자	⑥ 주소	주택	우편번호 (1xx-0xx) 서울특별시 ○○구 △△로			
		직장	우편번호 (1xx-05x) 경기도 ○○시 ○○○로			
⑦ 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 고 사 항					기 타 사 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재산	
<p>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대상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후보자 :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b></p>						

- 주 : 1. 무소속후보자는 “②소속정당”란에 “무소속”이라 표시함  
 2. “⑤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않음.  
 3. “⑥주소”란은 도로명(지번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함

## 후보자재산 신고사항

①소 속 정당명	□□□ 당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제18대 대통령선거	③성 명	홍길동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비고
토지	본인	임야	경기도 ○○시 ○○동 ○○ (7,000㎡)	5,000	
		전	경기도 ○○시 ○○동 ○○ (5,000㎡)	5,000	
		대지	서울특별시 ○○구 ○○동 ○○ (1,500㎡중 공유지분 500㎡)	39,600	
	배우자	잡종지	서울특별시 ○○구 ○○동 ○○ (1,650㎡)	4,950	
	부	전	○○광역시 ○○구 ○○동 ○○ (2,100㎡)	4,000	
	모	답	○○광역시 ○○구 ○○동 ○○ (2,600㎡)	3,250	
	장남	잡종지	○○광역시 ○○구 ○○동 ○○(3,500㎡)	8,200 (매입가격)	
	삼남	전	○○도 ○○시 ○○면 ○○ (1,200㎡)	5,000	
			대지	○○도 □□시 ○○리 ○○ (245㎡)	5,000
소계				80,000	
건물	본인	주택	서울 ○○구 ○○로 ○○ (건물 90㎡/대지 300㎡)	150,000	
	배우자	전세권	서울 ○○구 ○○로 ○○ (건물 60㎡/대지 10㎡-사무실)	20,000	전세보증금
	부	아파트	○○ 북구 ○○로 ○○ ○○아파트 (건물 94.76㎡)	150,000	등기미필
	모	빌딩	○○ 중구 ○○로 ○○ ◇빌딩 (건물165㎡중80/대지660㎡중 330)	500,000	공유(지분1/2)
	장남	아파트	○○ ○○구 ○○로 ○○ ○○아파트 (건물 94.76㎡)	60,000 (불입금액)	분양가액 120,000
	장녀	임차권	○○ 남구 ○○로 ○○ ○○빌라 (건물 60㎡)	45,000	임차보증금
	차녀	오피스텔	서울 ○○구 ○○로 ○○ △△빌딩 (건물 4.07㎡/대지 9㎡)	33,929	사실상소유(등기 명의인○○○는 차녀의 외삼촌)
소계				958,929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 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비고
부동산 준용권리	본인	광업권	철광석(강원 삼척시 ○○면 ○○리 ○○) 존속기간('00. 1. 1 ~ '12. 12. 31)	50,000	
		자동차	'05년식, 아반떼 XD, 1498cc, 서울1가 1234 (취득가액 : 10,000천원)	1,500	
	배우자	어업권	제1종양식어업(강원 삼척시 ○○면 ○○리 ○○) 존속기간('02. 1. 1~'12. 12. 31)	30,000	공유(지분½)
		중기	블도우저, 삼성21C37T, 98년, 경기01가1234	23,000	
	부	선박	강선, 어선, 동해호, 70톤, 95년 유80-3735	250,000	
		항공기	회전익, B0105CBS, 보잉사, 95년	300,000	
		항공기	비행기, TU206E, 세스나스, 88년	300,000	
	장남	선박	목선, 어선, 동남호, 30톤, 00년PS851234	300,000	
소계			354,500		
현금	본인	현금		12,750	
	배우자	수표		10,000	
	장녀	현금		11,000	
소계			33,750		
예금	본인	예금	○○은행 5,000 △△은행 5,000	10,000	
	배우자	예금	○○은행 2,000 △△은행 1,000 □□은행 7,000	10,000	
	장남	적금	○○은행	6,000 (불입금액)	2012.12.31만기 계약금액 (20,000)
		예탁(수)금	○○증권	5,000	
	장녀	신탁	○○투자신탁	10,000	2012.12.31만기
	삼남	보험	○○보험	12,000 (불입금액)	2012.12.31만기 계약금액 (20,000)
소계			53,000		
증권	본인	주식	(상장) ○○은행 3,000주, ○○증권 100주 (비상장) ○○전자 1,000주	40,000 5,000	최종가격 (2011.12.31)
		국채	(국민주택채권2종) 기획예산처	5,000	
		공채	(도로공사채) 한국도로공사	5,000	
		금융채	(산업금융채) 산업은행	5,000	최종가격 (2011.12.31)
		주식매수 선택권	○○전자 5,000주(390,000), ○○제지 10,000주 (400,000)		
소계			60,000		
채권	본인		사인간의 채권	10,000	2012.12.31만기
소계			10,000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비고
채무	본인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20,000 △10,000	2012.12.31만기
	배우자		전세보증금	△30,000	2012.12.30만기
소계				△60,000	
금 및 백금	배우자	금	24K (500g) (취득가액 6,650천원)	9,380	
소계				9,380	
보석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무색)	12,000	
		진주목걸이	5mm(20개-백색)	7,500	
소계				19,500	
골동품 및 예술품	본인	동양화	설촌(69.5×182, 청진 이상범, 1964년작) 1점	20,000	
	부	동양화	매조도(24×21, 단원 김홍도,조선말기작) 1점	150,000	
	모	도자기	백자(29×12.5×11.5,작자미상,조선초기작)1점	68,000	
소계				238,000	
회원권	본인	골프	○○컨트리클럽(경기 용인)	25,000	
	배우자	콘도	○○콘도미니엄(20평형, 강원 홍천)	5,000	
	장남	헬스	○○헬스클럽	18,000	
소계				48,000	
지식재산권	본인	특허권	관이음부위의 포장방법 061758호 ('93. 2.20~2008. 2.19)		
	부	실용신안권	컴퓨터전용테이블의 설치판 조립장치 071961호 ('93. 1.29 ~ 2300. 1.28)		
		디자인권	등록번호139961호('93. 5.31 ~ 2100. 5.30)		
		상표권	등록번호261655호('00. 4.28 ~ 2015. 4.27)		
		저작권	자화상(미술저작물) 등록번호931234호 ( '95. 2. 5 ~ )		
소계					



④재산의 구분	⑤후보자와의관계	⑥재산의 종류	⑦소재지·면적등 권리명세	⑧가액 (천원)	⑨비고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부	○ ○ 합자회사	○○도 ○○시 ○○로 ○○ 소재 영업의 종류(○○업), 자본금(○○백만원) 회사의 전년도매출액	50,000 (출자지분 비율 20%)	'97년도 출자 (1945년 부친 설립 유증받음)
소 계				50,000	
비영리법인에 출연재산	본 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학원(서울 ○○구 소재)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99년 출연
	배우자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재단(○○시 ○○구 ○○로 ○○) 대표자성명, 보유직위, 목적사업 (출연재산 : ○○백만원)		'00년 출연
소 계					
	차 남				고지거부 (회사원으로 독립 생계유지)
합 계	본 인			358,850	
	배우자			101,830	
	부			1,204,000	
	모			571,250	
	장 남			397,200	
	장 녀			66,000	
	차 녀			33,929	
	삼 남			22,000	
	총 계			2,755,059	

※ 합계란은 채무를 제외한 합산금액에서 채무를 감해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자 : 공직선거후보자
2. 신고시기 : 후보자등록시(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신고서접수기관 : 중앙위원회
4. 재산신고(산정)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현재
5.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6. 신고대상재산의 내용

### 가. 부동산

- 부동산(토지·건물)의 소유권·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소유권 및 분양권 등
-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 나. 동산 등

- 각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 현금(수표포함), 예금,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금·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7.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소명내용 기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비교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나. 기재순서

- 후보자재산신고사항서식중 “④재산의 구분”란에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지식재산권⇒합명·합자·유한회사출자지분⇒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순으로 기재한다.
- 신고재산(재산의 구분)별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순서로 작성하며 직계존속중에서는 부·모, 직계비속에서는 나이순으로 기재함.

### 다. 기재내용의 수정

기재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줄로 긋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됨.

### 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계란 앞의 “후보자와의 관계”란에 그 관계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고지거부”라 기재하며 ( )안에 그 사유를 병기함.

### 마.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에 “재산신고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 『각 항목 별 기재 요령』

### 1. 토 지

#### 가. 신고대상

○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매 도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되고,
- 매 입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중도금을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이 됨  
(계약금만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에서 제외)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  
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  
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  
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m<sup>2</sup>)을 기재함.

#### 라. “가액”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m<sup>2</sup>)”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  
가격”을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

- 다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충분양가액”을 기재함.
  - 공동소유 토지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 “계약관계”와 “수수한 총금액”을 기재함.

## 2. 건 물

가. 신고대상 : “1. 토지”의 경우와 같음

※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항목에 기재한다.

나. “재산의종류”란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전세(임차)권” 등으로 표시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소재지와 면적(대지 및 건물면적) 등을 기재함.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2$  (1평은  $3.3m^2$ )로 환산하여 기재함.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라. “가액”란

-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
  -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함.
  -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 $m^2$ )”으로 산정함.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함.
- 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함.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 ( )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하여 기재함.

마. “비고”란

- 미등기권리 ⇒ “등기미필” 이라고 표시함.
-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함.
- 분양권의 경우 ⇒ “충분양가액”을 기재함(예시 : 분양가액 00천원)
- 공동소유 건물일 경우 ⇒ “공유” 또는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그 지분을 기재함.
-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 ⇒ 사실관계를 기재함.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 “문중재산”이라고 표시함)
- 무허가건물일 경우 ⇒ “무허가건물”이라고 표시함.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 “재산의 종류”란 :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으로 기재함.

나.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① 광업권·어업권 :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② 자동차 : 차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등
- ③ 건설기계 : 기종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
- ④ 선박 : 종류, 용도, 선박명, 총톤수, 건조연도, 선박등록번호 등
- ⑤ 항공기 : 기종, 형식, 제작자, 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00천원)

다. “가액”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표) 또는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함. 이 때 시가표준액 등 평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최근의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시가표준액(과표)을 기재함. 다만, 기준가액 등 평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기재할 수 있음.

라. “비고”란

- 권리를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공유”, “합유”라고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함.
- 가액산정방법(예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매입액)을 기재함

#### 4. 현 금(수표 포함)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현금(수표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현금”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공란으로 둔다.

라. “가액”란 : 소유자별 현금(수표 포함)보유총액을 기재함.

#### 5. 예 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신고함. (계좌별 1,000만원 이상이 아님)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 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예탁금”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예탁기관별로 기관명을 기재함(“지점명” 미기재)

라. “가액”란 : 예탁기관별 예금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적립식예금의 경우 “만기일”과 “만기계약금액”을 기재함.

## 6. 증 권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주식”,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기재함.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 항목에 기재함.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증권 명칭과 수량을 기재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하여 ( )안에 기재함

라. “가액”란 :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단, 주식매수선택권은 공란으로 둠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재산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함

## 7. 채 권

가. 신고대상 : 각 채권자별로 채권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신고함.

※ 주택 기타 부동산의 전세(임차)권 등은 본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2.부동산” 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권”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 채권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권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8. 채 무

가. 신고대상 : 각 채무자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

※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본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공란으로 둔다.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사인간의 채무”,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소유자별·채무별 가액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채무의 “만기일자”를 기재함.

○ 부동산에 전세권·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 ⇒ “전세(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

## 9. 금 및 백금

가.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석류에 부착된 금·백금은 본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10. 보석류”항목에 기재함.

나. “재산의 종류”란

○ “금”·“백금”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함량(○○K)”, “중량(g)”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함.

## 10. 보석류

가. 신고대상 : 보석류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의 종류 또는 제품의 종류를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크기”, “색상”을 기재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1. 골동품 및 예술품

가. 신고대상 :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도자기”, “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등)”, “서예”, “공예”, “조각”, “수예”, “칠기”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작품명” 및 “작품의 특기사항(크기·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함.

※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cm로 표시함.

-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안에 기재함(예시 : 취득가액 ○○천원)

라. “가액”란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기재함. 이 때 평가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2. 회원권

가. 신고대상 :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재산의 종류”란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회원권명, 회원권이 소재하고 있는곳(등기가 되어 있는 소재지)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취득가액”을 기재함.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기재함(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확인하여 기재함) 이 경우 기준시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기재함

### 13. 지식재산권

가. 신고대상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나. “재산의 종류”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기재함.

※ 저작권(지적소유권)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음.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연간소득금액”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소득원인행위 등을 기재

### 14.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 신고대상회사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위 3개 회사는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회사적 특색을 갖고 있음.

나. “재산의 종류”란 : “합명”, “합자”, “유한”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전년도 말의 그 회사의 “회사명”과 “결산서상 연간매출액”을 간략하게 기재함.

라. “가액”란 : 회사정관으로 정하여진 출자재산(노력출자를 포함)과 자본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기재함.

마. “비고”란 : “출자연도”를 기재함.

## 15.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 “신고대상 비영리법인”이란 : 학술·종교·자산·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

나. “재산의 종류”란 :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기재함.

다.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란 : “법인명·보유직위·출연재산” 등을 기재함.

라. “가액”란 : 공란으로 둔다.

마. “비고”란 : “출연연도” 등을 기재함.

## 다.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 (1) 작성예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후 보	①성명	(한글)홍길동	②소 속 정당명	□□□당	③선거명	제18대 대통령선거
		(한자)洪吉童	④생년월일 (성 별)	195□. 8.31 (    날    )	⑤선거구명	
보	⑥주소	주택	우편번호 (1xx-0x9) 서울특별시 ○○구 △△로			
		직장	우편번호 (1xx-05x) 경기도 ○○시 ○○○로			
자	⑦등록 기준지	○○광역시 ○○구 ○○로				
⑧첨부서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적증명서 2부(본인 및 차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무확인서 1부(삼남)						
본인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후보자    홍    길    동 (인)						
중양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무소속후보자는 “②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 표시함.  
 2. “⑥주소”란과 “⑦등록기준지”란은 도로명(지번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함.  
 3.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은 발급받은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함.

<별 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 소 속 정 당 명	□□□당	② 선거명 및 선거구명	제18대 대통령선거	③ 성 명	홍길동
④본인과의 관계	⑤ 성 명 (한자)	⑥생년월일 (성별)	⑦주 소 ⑧등록기준지	⑨병역사항	⑩비고
본인	홍길동 (洪吉童)	195□. 8.31 (남)	서울특별시 ○○구 ○○로 ○○광역시 ○○구 ○○로	○군별 : 육군 ○계급 : 병장 ○입영일자 : 1976.12.14 ○전역일자 : 1979.6.15 ○전역사유 : 맏기	
(장남)	홍진□ (洪眞□)	197○. 7.26 (남)	서울특별시 ○○구 ○○로 ○○광역시 ○○구 ○○로	○1993. 6. 12. 2급 현역병 입영대상 ○1994~1999 입영연기(유착) ○2000. 9.15. 소집후 귀가 ○2000. 11. 12. 5급제국군연(사)	직병명등의 비공개요구  홍진현 ①
(차남)	홍진△ (洪眞△)	197○.11.23 (남)	서울특별시 □□구 ○○로 ○○광역시 ○○구 ○○로	○복무분야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 경기 과천시청 ○소집일자 : 2001.03.21 ○소집해제 : 2003.05.20	
(3남)	홍진○ (洪眞○)	198○.11.23 (남)	서울특별시 □□구 ○○로 ○○광역시 ○○구 ○○로	○군별(복무분야) : 육군 ○복무부대(기관) : 2162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입영일자 : 2011.10.21	
	“이	하	빈	칸”	

※ 병역사항에 관한 구체적 작성예시는 다음 면 참조



## “㉑ 병역사항”란 작성예시

※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상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함.

구 분	병역사항기재(예)	기재요령
복무를 마친 사람	만기 제대자 (소집 해제자)	○군별 : 공군 ○계급 : 병장 ○입영일자 : 1976.12.14 ○전역일자 : 1979.12.15 ○전역사유 : 만기
	복무 이탈자	○군별 : 육군 ○계급 : 이병 ○입영(입관)일자 : 1971. 3. 5 ○전역(해제)일자 : 1977. 5. 1 ○전역(해제)사유 : 탈영삭제
복무중인 사람	현역	○군별 : 육군 ○복무부대(기관) : 2162부대 정비대대 ○계급 : 일병 ○입영일자 : 2011.10.21
	공익 근무 요원	○복무분야 : 공익근무요원 ○복무부대(기관) : 경기 과천시청 ○계급 : 일병 ○소집일자 : 2011. 4. 19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면제자	○1993. 6. 12 2급 현역병입영대상 ○1994~1999 입영연기(유학) ○2000. 9. 15 소집후 귀가 ○2000. 11. 12 5급 제2국민역(사시)
	기피자	○1970. 7.22 입영기피이후 병적기록이 없음. ○1989년 병역의무종료
복무대기중인 사람	○병역처분일자 : 2011. 11. 28 ○신체등위 : 1급 ○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군별 : 육·해·공군으로 구분  ○입영일자 : 사병은 입영일자, 장교는 입관일자  ○전역일자 -현역·상근예비역·의무경찰 등은 전역일자 -공익근무·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은 소집해제 일자  ○복무분야 :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 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기재  ○복무기관 : 해당복무관서 또는 업체명  ○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제2국민역 등으로 기재  ○병역처분사유 : 질병( ), 수행, 생계곤란, 고아, 사생아, 국외이주, 장기대기, 독자등  ※ 질병이라고 기재시 괄호안은 질병명 기재
징병검사대상자	○2010년 제1국민역 ○2012년 징병검사대상	
병적기록 없는 사람등	○병역법제정(49.8.6)이전으로 병적부작성안됨 ○0000년 병역의무 종료	
	○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0000년 병역의무종료	

(2) 작성요령(병역사항)

- ①항 “소속정당명”란은 후보자의 추천정당명을,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함.
- ②항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은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아니함.
- ③항 “성명”란은 후보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함.
- ④항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을 구분하되,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함.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및 18세미만의 남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기 재 요 령 -

- 1. “본인”, “아들”, “손자” 또는 “외손자”로 기재
  - 2. 후보자본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로 기재하고, 병역사항란에 “병역의무 없음”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3. 아들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 “3남” 등으로 기재
  - 4. 손자 또는 외손자의 경우에는 “손자” 또는 “외손자”로 기재
- ⑤항 “성명”란은 신고대상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고, ( )안에는 이름을 한자로 기재
- ⑦·⑧항 “주소”란과 “등록기준지”란은 도로명(지번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함.
- ⑨항 “병역사항”란은 첨부한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신고대상자로서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의 병역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되, “군번”은 기재하지 아니함. 다만, 병역공개법 제3조의 신고대상자로서 복무중이거나 의무종사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

1. 소 속 : 복무기관의 담당부서까지 기재하되, 군의 경우에는 ( )에 부대의 통상명칭을 기재 [예 : 육군제1사단 1연대 1대대(육군 제1111부대)]
2. 군별 또는 복무형태 : 육군 · 해군 · 공군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공익근무요원 ·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 등의 복무형태를 기재
3. 계급 또는 직책, 입영(소집, 편입) 연월일 :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

⑩항 “비고”란은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요구”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3) 유의사항

#### (가)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여성도 포함)
- 후보자의 18세이상 직계비속(아들, 손자, 외손자)
  - ※ 1994. 12. 31.이전 출생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비속은 신고하여야 함. 다만,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와 18세미만의 남자는 신고대상자가 아님.

#### (나) 신고서 작성 및 증명서 등 발급

-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인 2012. 10. 25. 이후에 발급 받아야 함.
-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직자(등)신고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여성후보자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본인의 병역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병역사항신고서만 작성·제출함. 이 경우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는 “병역의무 없음”으로 기재함.
- (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병역사항은 원안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되므로 가급적 PC나 타자로 정확하게 작성하되,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선거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정확하게 작성·제출함.

## 병역사항신고시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

### 1.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과 별	질 병 명 및 심 신 장 애 내 용
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천성면역결핍증(AIDS)</li> <li>○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li> </ul>
신 경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련성 질환 및 이상운동증</li> <li>○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 포함)</li> </ul>
정 신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질성 정신장애</li> <li>○ 물질관련 장애</li> <li>○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장애·분열정동형장애 또는 망상장애</li> <li>○ 기타 정신병적 장애</li> <li>○ 1형 또는 2형 양극성 장애</li> <li>○ 주요 우울장애, 신경증적 장애</li> <li>○ 기타 기분장애</li> <li>○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li> <li>○ 인격장애 또는 행태장애</li> <li>○ 경계선지능 또는 정신지체</li> <li>○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 장애</li> </ul>
피 부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li> <li>○ 나병, 매독</li> <li>○ 백반증 또는 백색증, 탈모증</li> </ul>
일반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항문</li> </ul>
정형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li> <li>○ 유착지(수족지)</li> </ul>
신경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실질내 병변에 의한 간질발작</li> </ul>
흉부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곽기형</li> </ul>
안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위 또는 사시</li> <li>○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li> <li>○ 무안구 또는 안구로</li> <li>○ 광각이하의 실명</li> </ul>
이비인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li> <li>○ 농 아</li> </ul>
비뇨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도협착, 요로누공</li> <li>○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li> <li>○ 정류고환</li> <li>○ 요도상열 또는 하열</li> <li>○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li> <li>○ 유환관증</li> <li>○ 고환결손 또는 위축, 음경절단</li> </ul>
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개루 및 구개열</li> <li>○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li> </ul>

### 2. 처분사유 : 혼인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

## 라.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1) 작성예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선 거 명		제18대 대통령선거	선 거 구 명	
후 보 자	성 명 (한 자)	홍 길 동 (洪 吉 童)	소속정당명	□□□당
	생년월일 (성 별)	195□. 8. 31 (남)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로
납 세 신 고 사 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산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첨부서류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				
<p>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월    일 위 후보자 홍 길 동 ①</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함.  
 2. “납세신고사항”란에는 소득세 등의 신고사항을 “√“ 등으로 표시함.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전 1월(2012. 10. 25)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주소”란은 도로명(지번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함.

<별 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 속 정 당 명		□□□당		선 거 명	제18대 대통령선거			성 명	홍길동(洪吉童)								
(단위 : 천원)																	
연 도	후보자 와의 관계	성 명	소 득 세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해당연도체납액 (완납일자)	현 체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 체납액			
2008 년도	부	홍아빠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모	홍엄마	150	-	-	200	110 (08.12.1)	-	100			450	110 (08.12.1)				
	본인	홍길동	1,500	-	-	380	-	-	200	-	-	2,080	-	-	-	-	-
	배우자	이배우	-	해	-	당	-	없	-	음	-	-	-	-	-	-	-
	장남	홍진□	200	-	-	20	-	-	150	-	-	370	-	-	-	-	-
	차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
	3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
	손자	홍손자	-	해	-	당	-	없	-	음	-	-	-	-	-	-	-
<b>소 계</b>			1,850	-	-	600	110 (08.12.1)	-	450	-	-	2,900	110 (08.12.1)	-	-	-	-
2009 년도	부	홍아빠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모	홍엄마	150	-	-	200	-	-	100	-	-	450	-	-	-	-	-
	본인	홍길동	1,500	-	-	380	-	-	200	-	-	2,080	-	-	-	-	-
	배우자	이배우	100	-	-	100	-	-	100	-	-	300	-	-	-	-	-
	장남	홍진□	200	-	-	20	-	-	150	-	-	370	-	-	-	-	-
	차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
	3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
	손자	홍손자	-	해	-	당	-	없	-	음	-	-	-	-	-	-	-
<b>소 계</b>			1,950	-	-	700	-	-	550	-	-	3,200	-	-	-	-	-
2010 년도	부	홍아빠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모	홍엄마	150	-	-	200	-	-	100	-	-	450	-	-	-	-	-
	본인	홍길동	1,500	-	-	380	-	-	200	-	-	2,080	-	-	-	-	-
	배우자	이배우	500	-	-	100	-	-	100	-	-	700	-	-	-	-	-
	장남	홍진□	200	-	-	20	-	-	150	-	-	370	-	-	-	-	-
	차남	홍진△	100	-	-	50	-	-	200	-	-	350	-	-	-	-	-
	3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
	손자	홍손자	-	해	-	당	-	없	-	음	-	-	-	-	-	-	-
<b>소 계</b>			2,450	-	-	750	-	-	750	-	-	3,950	-	-	-	-	-
2011 년도	부	홍아빠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모	홍엄마	150	-	-	200	-	-	100	-	-	450	-	-	-	-	-
	본인	홍길동	1,500	-	-	380	-	-	200	-	-	2,080	-	-	-	-	-
	배우자	이배우	500	-	-	100	-	-	150	200	200	750	200	200	200	200	200
	장남	홍진□	200	-	-	20	-	-	-	150 (11.4.30)	-	220	150 (11.4.30)	-	-	-	-
	차남	홍진△	300	-	-	10	-	-	500	-	-	810	-	-	-	-	
	3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손자	홍손자	-	해	-	당	-	없	-	음	-	-	-	-	-	-	
<b>소 계</b>			2,650	-	-	710	-	-	950	350	200	4,310	350	200	200	200	200
2012 년도	부	홍아빠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모	홍엄마	150	-	-	200	-	-	100	-	-	450	-	-	-	-	-
	본인	홍길동	1,500	-	-	380	-	-	100	-	-	1,980	-	-	-	-	-
	배우자	이배우	500	-	-	100	-	-	150	-	-	750	-	-	-	-	-
	장남	홍진□	200	-	-	20	-	-	150	-	-	370	-	-	-	-	-
	차남	홍진△	300	-	-	10	-	-	500	-	-	810	-	-	-	-	-
	3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손자	홍손자	-	해	-	당	-	없	-	음	-	-	-	-	-	-	
<b>소 계</b>			2,650	-	-	710	-	-	1,000	-	-	4,360	-	-	-	-	-
합 계	부	홍아빠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모	홍엄마	750	-	-	1000	110 (08.12.1)	-	500	-	-	2,250	110 (08.12.1)	-	-	-	-
	본인	홍길동	7,500	-	-	1,900	-	-	900	-	-	10,300	-	-	-	-	-
	배우자	이배우	1,600	-	-	400	-	-	500	200	200	2,500	200	200	200	200	
	장남	홍진□	1,000	-	-	100	-	-	600	150 (11.4.30)	-	1,700	150 (11.4.30)	-	-	-	-
	차남	홍진△	700	-	-	70	-	-	1,200	-	-	1,970	-	-	-	-	
	3남	홍진○	-	해	-	당	-	없	-	음	-	-	-	-	-	-	
	손자	홍손자	-	해	-	당	-	없	-	음	-	-	-	-	-	-	
<b>합 계</b>			15,550	-	-	3,470	110 (08.12.1)	-	3,700	350	200	18,720	460	200	200	200	200

(2) 작성요령(소득세등 납부·채납사항)

(가) “후보자와의 관계”란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

※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기재함.

(나) “세금 납부·채납액”란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2007년도~2011년도 사이에 발생한 금액을 2008년도~2012년도 란에 각각 기재하고, 채납세액은 당해연도에 그대로 기재함.

○ 재산세

납부세액 및 채납세액은 2008년도~2012년도 사이에 발생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그대로 기재함.

○ 금액은 백원단위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함.

○ 후보자의 직계존속중에서 자신의 세금납부·채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함.

○ 납부세액과 채납세액이 없는 때에는 “해당없음”이라 기재함.

○ 해당연도 과세분중 채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 )안에 완납한 일자를 기재함.

○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채납은 제외함.

(3)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가) 세무서(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채납증명서 발급시)

후보자등 신고대상자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발급신청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정함.

(나) 지방자치단체(재산세 납부·채납증명서 발급시)

하나의 구·시·군청에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지”  
란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고, “납부·채납세액”란에는 이들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 및 채납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무방함.

## 마.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서식

### (1) 작성예시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 제18대 대통령선거

#### 1. 인적사항

기 호	소 속 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	□□□당	홍길동	남	195□. 8. 31 (○○세)	정당인	○○대학교 □□학과졸업	(전)제17대 국회의원 (현)주식회사 ○○○대표이사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755,059	358,850	101,830	1,775,250	519,129 (차남 : 고지거부)	육군 병장 (만기전역)	-장남 : 제2국민역 -차남 : 공익근무요원 -3남 : 육군일병(복무중)

####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8,720	660	200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6월(1990. 6.20) -상해죄 징역5년 (1992.10. 1)
후 보 자	10,300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 우 자	2,500	200	200	
직계존속	부	신고거부		
	모	2,250	110	
직계비속	2,670	150	해당없음	

#### 4. 소명서

전과기록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제도 쟁취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경찰관과의 몸싸움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임.

(2) 작성요령

(가) “소속정당명 및 후보자 성명”란

소속정당명 및 후보자 성명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기재된 대로 한글로 기재하되, 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으로 기재함.

(나) “생년월일”란 : 나이는 선거일 현재의 “만 나이”를 기재함.

(다) “직업”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을 그대로 기재함.

(라) “학력”란

-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학력은 본문 “Ⅲ. 2. 나. (5). (나) 증명서류제출대상 학력”의 예에 의함.

(마) “경력”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을 그대로 기재함.

(바) “재산상황”란

-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기재함.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고지거부”라고 기재함.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중 고지거부한 자와 고지거부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함.

예) 직계비속의 재산총액이 519,129,000원인 경우

⇒ 519,129(차남 : 고지거부)

- 신고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해당없음”이라 기재함.

(사) “병역사항”란

- 18세인 신고대상자는 “제1국민역 편입사항”을 기재함.
-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사항”을 기재함.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전역(소집해제)당시의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 사유”를 기재함.
- 현역, 보충역, 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중”이라 기재함.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병역이 면제되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는 병역처분내용을 기재함.

(야)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란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월(2012. 10. 25)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의해 기재하되,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이내의 체납은 제외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 또는 체납에 관한 신고사항을 거부한 경우에는 납세액란 또는 체납액란에 “신고거부”라고 기재함.

※ 직계존속중에서 신고사항을 거부한 자와 이를 거부하지 않은 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함.

예) 모의 납세액이 2,250,000원인 경우 ⇒ 부 : “신고거부”, 모 : “2,250”

(자) “전과기록”란

후보자 본인의 금고형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기재함(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포함).

(차) “소명서”란

-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채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 소명서는 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를 포함해 100자 이내로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함.

(카) 기타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 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외 해당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나 다른 정당·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함.

### 3 각종 신청·신고·제출 서식 목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후보자추천서
3. 후보자본인승낙서
4.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신청서
5.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6.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7.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7-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 7-2.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
8.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8-1.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9.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10.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11. 후보자 사퇴신고서
12.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교부신청서
13.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서
14. 개표참관인신고서
15.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6.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약도

17.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변경)신고서  
     <별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18. 회계책임자 (선임) · (겸임) · (변경)신고서
19.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20.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배우자 등)의 (선임) · (공동선임) · (해임) · (교체)신고서
21. 인영신고서
22.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23.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24.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 · 삭제요청서
25.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6.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 · (제출서)
27. 접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28. 선거공약서 제출 및 공개 승낙서
29.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30.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31.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32.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 · 라디오용)제출서  
     <별지> 경력방송용 사진파일 규격
33. 표지교부신청서
- 33-1.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34. 대담 · 토론회참석승낙서
35.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 개최신고서

36.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37.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38.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39.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상황 통보서
40. 선거운동용 무료승차권 발급신청서
41. 이의 신청서
42. 반론보도 청구서
43.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44.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45.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46.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47.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제기서
48. 투표참관인 신고서
49. 회송참관인 신고서
50.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51. 위성방송연설원 교체신고서
52.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5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54.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5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56.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57.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붙임 1**

[별지 제12호서식의(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	○	당	인	
신 청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덧붙임 서류 : (1)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2) 후보자본인승낙서(정당추천 후보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5) 주민등록표 초본 등
- (6)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7)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8)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9)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1) 인영신고서
- (12) 사진

- 주: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 붙임 2

[별지 제12호서식의대]

# 후 보 자 추 천 서

1. 선 거 명

2. 추천받는 자

가. 성 명 (한자 : )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3. 추천절차

위의 사람을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2년 월 일

추천인 [ ○ ○ ○ 당 인 ]  
대표자 ○ ○ ○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추천절차”란은 「공직선거법」 제47조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붙임 3

[별지 제12호서식의(바)]

## 후보자본인승낙서

1. 소속 정당명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5. 직 업

본인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자로 추천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인

○○당 귀중

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 붙임 4

[별지 제11호서식의(나)]

### 후보자추천장(검인) · (교부)신청서

1. 선 거 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2. 입후보예정자
  - 가. 성 명 (한 자)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소(전화번호)
3. (검인) · (교부)신청매수 :            매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추천장의 (검인) ·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입후보예정자) ○ ○ ○ 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붙임 5**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선위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등록의무자	① 성명	(한글)	② 소속정당	③ 선거명			
		(한자)	④ 생년월일 (성별)	⑤ 선거구명			
후보자	⑥ 주소	주택					
		직장					
⑦ 신고사항 (해당항목에 “√”자 표시)							
재 산 신 고 사 항				기 타 사 항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법인에 출연재산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	<input type="checkbox"/> 예금	<input type="checkbox"/> 증권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채무	<input type="checkbox"/> 금·백금					
<input type="checkbox"/> 보석류	<input type="checkbox"/> 골동품·예술품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input type="checkbox"/> 재산신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출자지분							
<input type="checkbox"/> 합병회사							
<p>본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후보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주 : 1. 무소속후보자는 “②소속정당”란에 “무소속”이라 기재합니다.  
 2. “⑤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⑥주소”란은 도로명(지번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합니다.

## 후 보 자 재 산 신 고 사 항

①소 속 정당명		②선거명 및 선거구명		③성 명	
④재산의 구 분	⑤후보자 의 관계	⑥재산의 종 류	⑦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⑧가 액 (천원)	⑨비 고
합 계					

※ 무소속후보자는 “①소속정당명”란에 “무소속”이라고 기재함.





<별 지>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①소 속 정 당 명		②선 거 명 및 선거구명		③성 명	
④본인과 의관계	⑤성 명 (한자)	⑥생년월일 (성별)	⑦주 소	⑨병 역 사 항	⑩비고
			⑧등록기준지		



<별 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소속정당명		선거명			성명									
(단위 : 천원)														
연도	후보자 와의 관계	성명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		
			납부 세액	당해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당해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당해연도 체납액 (완납일자)	현재 납액	납부 세액	체납액	현재 납액
2008 년도														
	소계													
2009 년도														
	소계													
2010 년도														
	소계													
2011 년도														
	소계													
2012 년도														
	소계													
합 계														
	합계													

- 주 : 1. “후보자와의 관계”란에는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장남·차남·3남”, “장녀·차녀·3녀” 등으로 기재하되,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합니다.
2.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납부세액”란에 “신고 거부”라고 기재합니다.
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소득세 등”이라 함)는 천원단위(백원단위 절사)까지만 기재합니다.
4. 소득세 등의 납부·체납사항 제출대상자중 납부·체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5. 해당연도 과세분중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완납일자를 기재합니다.
6.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붙임 7-1**

<b>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신청서</b>					처리기간
					2일
후 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번 호)	
증명발급대상 직계 존비속	명단 별지	* 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은 별지로 첨부하여 후보자의 서명 또는 도장(위임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갇인 넣인			
증명발급대상기간	최근 5년간				
원천징수 소득세 발급 미회망 세목 <sup>주1)</sup>					
제 출 처	선거관리위원회	용 도	공직선거후보자용		
위 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위임받은 사람) : (성명)			(서명 또는 도장)		
<b>위 임 장</b> (본인이 아닌 경우)					
위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 (성명)			(인감도장)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p>※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중 발급을 원하지 않는 세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원천징수 세액은 제외함.</p> <p>2.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하여 드립니다(후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p> <p>3. 다른 사람의 인감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별 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 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1		본 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2		배 우 자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배우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직 계 존 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4		직 계 존 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존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5		직 계 비 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6		직 계 비 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직계비속]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7		대 리 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대리인(위임받은 자)]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5년)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계	명		-	



<별 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대상자 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일련번호	성명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인)	본인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2	(인)	배우자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3	(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4	(인)	직계존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5	(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6	(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7	(인)	직계비속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5년 ) ☑ <b>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계	명			







**붙임 9**

[별지 제12호서식의(카)]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 거 구 명	
후보자	성 명 (한 자)	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국 내 정 규 학 력			
학 력(수학기간)	증 명 서 명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명
외 국 의 교 육 기 관 에 서 이 수 한 학 력			
학 력(수학기간)	증 명 서 명	발 급 번 호	발 급 기 관 명
<p>덧붙임 : 증명서(외국 학력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포함함) 부.</p> <p>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월      일 위 후보자 ○ ○ ○      인</p>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주: 1.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을 말하며,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에 한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주소”란은 도로명(지번 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만 기재합니다.
5. 학력은 출신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10**

[별지 제14호서식]

○ ○ 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변동 통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적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1. 후보자성명 (한 자 )
2. 당적변동연월일
3. 당적변동내용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주 : 당적변동내용은 당적이탈·변경, 이중당적보유 등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12**

[별지 제10호서식의(다)]

**(선거인명부) ·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교부신청서**

투 표 구 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 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원

2012년                      월                      일

신 청 인      [ 후    보    자 ○ ○ ○ (인) ]  
                  [ 선    거    사    무    장 ○ ○ ○ (인) ]  
                  [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 (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5**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1. 선 거 명 :
- 2. 후보자 성명 :
- 3. 신고 내역

회 차	전송용 전화번호	전송 예정일	전송 예정 통수	비 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신고인 : 후 보 자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별 지>

## 선거사무소 등 약도

선 거 명	
후보자 성명	
선거사무소(연락소) 주 소	
선거사무소(연락소) 전 화 번 호	

약 도<예시>



**붙임 17**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 (변경) 신고서**

명칭	소재지	(설치) · (변경)	연월일	정당선거사무소장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매.      끝.

2012년      월      일

신고인 [ ○      ○      당      인  
          [ 대표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0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명)을 붙입니다.
-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 4.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과 교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 지>

## 정당선거사무소인영등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인 영

**붙임 18**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성명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치자금 예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입용				
지출용				
<p>「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    인</p>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li> <li>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서)</li> <li>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li> <li>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서)</li> </ol>				
<p>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p> <p>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대표자, 공직선거의 후보자입니다.</p>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성 명 ○○○ 인</p> <p style="margin-top: 20px;">○○○ 귀하</p>		
<p>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p>		

**붙임 20**

[별지 제16호서식의(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배우자등)의 (선임) · (해임) · (교체)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 · (공동선임) · (해임) · (교체)	년월일	일련 번호	비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배우자등)을 (선임) · (해임) · (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덧붙임 : 1. 신분증명서 사본 ○○매  
2. 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3.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 ○매

2012년      월      일

신고인 [      ○                      ○                      당 인 ]  
[ 대 표 자 ○ ○ ○ 인 ]  
[ 후 보 자 ○ ○ ○ 인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 또는 그 상급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이 신고하는 때에는 선거연락소장과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은 그에 대응하는 당부 또는 그 상급당부가, 배우자등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 적습니다.
5. “일련번호”란은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6.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공무원증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2**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분 실 자	○	○	○ 인
	(선임자)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선 거 사 무 장	○	○	○ 인
	○○ 선 거 연 락 소 장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2.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배우자·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4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붙임 23**

[별지 제17호서식의(나)]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 거 명 :
2. 정 당 명 :
3. 후보자성명 :
4. 제출내역 :

품 명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 · 대상 · 지역	비고
선 거 벽 보							
선거공보	책자형	일반형					
		점자형					
	전 단 형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일반형						
	점자형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제출인

○	○	당	인
대 표 자	○○○	인	
후 보 자	○○○	인	
선 거 사 무 장	○○○	인	
○○선거연락소장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8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일반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접자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을 배부할 지역의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4.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5. “첨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 붙임 24

[별지 제17호서식의(라)]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정정 · 삭제 요청서

선 거 명		선 거 구 명
후 보 자	성 명 (한 자)	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성 별)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또는 삭제 매수
2. 정정 또는 삭제할 내용
3. 정정 또는 삭제 이유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4조제5항)·(제65조 제11항)에 따라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을 정정(삭제)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후보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이 신청서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정정 또는 삭제 매수”란에는 선거구 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기재합니다.

**붙임 25**

[별지 제17호서식의(다)]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18대 대통령선거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 ( 세 )	직 업	학 력	경 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 보 자	배 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 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후 보 자				
배 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 소명서

- 주: 1.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적고,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직업·경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재산상황”은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적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고지거부”라고 적습니다.
3. “병역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 가.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 내용
  - 나.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사유다. 복무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중”이라 기재
  - 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그 병역처분 내용
4.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란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되,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건당 10만원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5.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금고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적습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포함합니다).
6. “소명서”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란을 만들고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7.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면에 적되, 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8.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붙임 27**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

##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앞 면)

<p>점자형 선거공약서</p> <p>보내는 사람 주소</p> <p>성명</p> <p>□□□-□□□</p>	<p>○○우체국</p> <p>요금별납</p>
<p>받는 사람 주소</p> <p>성명</p> <p>□□□-□□□</p>	
<p>이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p>	

(뒷 면)

- 주: 1. 이 봉투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붙임 28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

### 선거공약서 제출 및 공개 승낙서

1. 선거명
2. 후보자명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선거공약서(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을 승낙합니다.

덧붙임 : 선거공약서(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서) 1부

년            월            일

제출·승낙인 후보자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29**

[별지 제 18호의3서식]

**신문광고계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교 부 신 청 수 량	비 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신문광고계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 당 인  
{ 대표자 ○ ○ ○ 인 }  
{ 후보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30**

[별지 제22호서식의(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1. 후보자의 연설

방송시설구분	횟수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부터~까지)	소요시간	비고
텔레비전	1				
	2				
	3				
라디오	1				
	2				
	3				

2. 연설원의 연설

방송시설구분	횟수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부터~까지)	소요시간	연설원 인적사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직업	
텔레비전	1								
	2								
	3								
라디오	1								
	2								
	3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당원 인  
{ 대 표 자 ○ ○ ○ 인 }  
{ 후 보 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란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3.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이라 기재합니다.

## 붙임 31

[별지 제22호서식의(다)]

### 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1. 방송시설명
2. 이용일시
3. 방송연설원 교체상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비고
교체전					
교체후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원을 교체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청인 [ ○ ○ 당 인 ]  
[ 대 표 자 ○ ○ ○ 인 ]  
[ 후 보 자 ○ ○ ○ 인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방송시설명” 및 “이용일시”란은 교체전의 방송연설원이 이용하려던 것을 말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붙임 32**

[별지 제24호서식의(나)]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력방송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기 호
- 2. 소속정당명
- 3. 후보자성명 (한자 )
- 4. 생년월일 . . 생(만 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덧붙임 : 사진 매.

			2012년		월		일	
			○				당	인
제출인	[	대표자	○	○	○	○	인	]
		후보자	○	○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사진은 텔레비전방송용이며 5센티미터×7센티미터의 천연색사진으로 하되,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하며, 그 매수는 텔레비전방송시설의 수에 상당하는 매수이어야 합니다.



<별 지>

## 경력방송용 사진파일 규격

### 1. 디지털 사진(jpg파일) 촬영 규격

- 해상도 : 300dpi
- 5인치 x 7인치 (12.7cm x 17.8cm)

### 2. 원고 부착용 사진 규격

- 명함판 사진 부착

※ 디지털 사진과 인화하여 원고에 부착하는 사진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 준수 사항>

- 넥타이선의 배꼽 아래 까지 촬영
- 양쪽 어깨선이 다 보이도록 촬영
- 얼굴과 몸은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
- 인물의 배경은 흰색(white)으로 촬영
- 칼라사진



**붙임 33**

[별지 제18호서식]

**표지교부신청서**

구 분		신 청 수 량	종 류	규 모(규격)	비 고
현 수 막					
선거벽보등 부착용	자 동 차				
	선 박				
공개장소연설 ·대담용	자 동 차				
	확성장치				
	녹 화 기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현수막)·(선거벽보 등 부착 자동차·선박)·(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 ○ ○ ○ 당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선거연락소장 ○ ○ ○ ○ 인

신 청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현수막”, “선거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선박”의 종류 및 규모(규격)란과 “녹화기”의 신청 수량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종류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고, 규모는 승차 인원, 톤수 등을 기재합니다.
3. “녹화기”의 종류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m’로 표시합니다.
4. 비고란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있어 그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붙임 33-1**

[별지 제18호의2서식]

## 현수막 등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표지 번호: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른 선거벽보 등 부착 자동차·선박)의 표지를 (잃어버려)·(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	○	당	인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후	보	자	○○○	인	
	선	거	사	무 장	○○○	인
	○○	선거	연락	소장	○○○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분실장소와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표지를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4.는 적지 않습니다.

**붙임 34**

[별지 제30호서식의(4)]

**대담 · 토론회참석승낙서**

- 1. 주최단체명
- 2. 개최일시
- 3. 대담 · 토론 참가자
  - 가. 참가자별 : (후보자) · (대담 · 토론자)
  - 나. 성명
  -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가 개최하려는 후보자 초청 대담 · 토론회에 대담 · 토론의 참가자로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2년        월        일

승낙인 [ 후보자        인)  
          [ 대담 · 토론자    인)

(            단체) 귀중

**붙임 35**

[별지 제30호서식의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1. 주 최 자

가. 단 체 명 :

나. 대표자성명 :

다.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라. 회 원 수 :

마. 설 립 근 거 :

2. 개최일시·장소

가. 개 최 일 시 : 2012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 최 장 소 :

다. 참석예정자수 :

3.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사회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다. 진행절차(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1) 참가자별 발언시간 : 분(1회기준)

(2) 참가자별 발언횟수 : 회

(3) 대담·토론의 진행순서(참가자의 발언순서 포함)

4. 대담·토론 참가자(후보자)명단

후 보 자			비 고
기 호	소 속 정당명	성 명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덧붙임 : 1. 대담·토론 참가자의 승낙서      부.  
 2.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부(필요시 덧붙임).

2012년      일      일

신고인(○ ○ 단체 대표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36**

[선방위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 1. 선 거 명
- 2. 개최일시
- 3. 대담·토론회 참석자
  - 가. 참석자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 나. 성명
  - 다. 주민등록번호

위 본인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2년            월            일

[	후   보   자            ○   ○   ○   (인)
	○   ○   당            대   표   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작인</span>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붙임 37**

[선방위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담·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
2. 소속정당명
3. (후보자)·(대담·토론자) 성명

위 본인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불참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2012년    월    일

[ 후보자    ○ ○ ○    인  
○ ○ 당    대 표 자    직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귀중**

주 :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38**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요 청 인 인적사항	선 거 명		선 거 구 명			
	후 보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요청사항	위법정보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주소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요청내용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위반게시물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2012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인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귀중

주 :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39**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사항 통보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요 청 일 자	
요 청 내 용	(삭제) ·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
통 보 사 유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함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 ·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 요청서 사본 1부.

2012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40**

[별지 제32호서식]

**선거운동용 무료승차권 발급신청서**

1. 정 당 명	
2. 후 보 자 성 명	
3. 후보자등록연월일	
4. 무료승차권신청매수	매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3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 인

인증 제 호

**무료승차권발급인증**

후보자성명

위의 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인증합니다.

2012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붙임 4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 신청서															
신청인	정당	정당명	대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후보자	후보자명 (입후보예정자)	선거명	주민등록번호	주소(e-mail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인터넷 언론사명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성명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대상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게재위치(URL)		보도크기 (byte)									
보도내용															
이의신청 사항															
불공정 이유															
<p>「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0px;">이 의 신 청 인</div> <div style="margin-left: 100px;"> <table style="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정당명</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대표자</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직인  </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후보자 (입후보예정자)</td> <td style="border: none;">  인  </td> </tr> </table> </div> </div> <p><b>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b></p>							┌	정당명		├	대표자	직인	└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인
┌	정당명														
├	대표자	직인													
└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인													
구비서류 : 선거보도(사진, 동영상 포함)전문						수수료 없음									

- 주 1. '이의신청사항'란에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시정·정정보도요구 등)을 기재합니다.  
 2.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42**

[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b>반론보도 청구서</b>						
청 구 인	정 당	정 당 명	대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후 보 자	후보자명 (입후보예정자)	선 거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e-mail주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인터넷 언론사명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대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반론보도 청구대상		보 도 제 목		보 도 일 자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p>「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론보도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청 구 인</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div style="margin-bottom: 2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정당명</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대표자</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후보자 (입후보예정자)</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div> </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div style="margin-bottom: 20px;">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div> <div style="margin-top: 20px;">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div> </div> </div>				
<p><b>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귀중</b></p>						
구비서류 : 1. 인터넷언론사에 청구한 반론보도청구서 2.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						수수료
						없 음

주 : '보도내용'란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44**

[별지 제38호서식]

**(정당·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 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 량	배부 방법	비 고
정당·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에 따라 (정당·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당·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2부)·(2권)·(각 2부)

2012년            월            일

[
○            ○            당 인
 ]

제출인 [
대 표 자 ○ ○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배부지역”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 등을 기재합니다.  
 2. “배부가능수량”은 정당·정책홍보물의 경우 배부대상지역의 소속당원수를, 정당기관지의 경우 그 동안의 통상적인 배부수량을 기재합니다.  
 3.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배부가능수량”은 “판매하려는 수량”을, “배부방법”에는 “판매하려는 장소”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권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4. 정당·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45**

[별지 제40호서식]

##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 회 명	개 최 일 시	개 최 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 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고 인      ○                      ○                      당 인      ]  
                  [ 대 표 자 ○ ○ ○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46**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 3. 조사 목적

## 4. 조사 일시

##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 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 6. 전체 설문내용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신고인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47**

[별지 제33호의2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 기 자	(정당명)·(후보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제기대상 여론조사	공표·보도 매체			
	공표·보도일자			
	공표·보도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이유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7항 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붙 임 : 이의제기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2012년      월      일

이 의 제 기 자

○	○	당 인	○
대 표 자	○	○	인
후 보 자	○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정당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2.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3.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48**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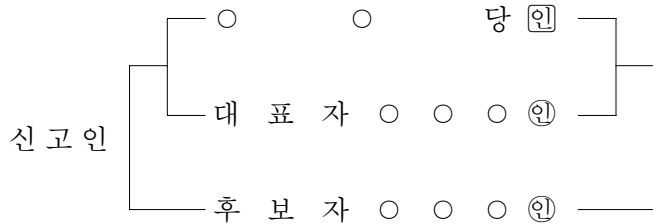
## 투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2. 참관인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신분증명서			
							번호	발급 연월일	반환 연월일	비고

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교체)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관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성명”란에 한글 이름과 (    )안에 영문대문자 이름을 함께 적고, “주소”란에는 국외 거소지를 적습니다.  
 4. “비고”란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49**

[별지 제51호서식의(가), 준용]

## 회송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 성명
2. 참관인

참관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신분증명서			
						번호	발급 연월일	반환 연월일	비고

회송참관인을 위와 같이 (교체)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신고인

○ ○ ○ 당 인

대 표 자 ○ ○ ○ 인

후 보 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교체신고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회송참관인은 “성명”란에 한글 이름과 ( )안에 영문대문자 이름을 함께 적고,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지를 적습니다.

**붙임 50**

[별지 제22호서식의(나), 준용]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

1. 후보자 연설

방송시설구분	횟수	위성방송시설명	이용일시(부터~까지)	소요시간	비고
텔레비전	1				
	2				
	3				
라디오	1				
	2				
	3				

2. 연설원의 연설

방송시설구분	횟수	위성방송시설명	이용일시(부터~까지)	소요시간	연설원 인적사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	직업	
텔레비전	1								
	2								
	3								
라디오	1								
	2								
	3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인    [            ○            ○            당 인 ]  
                  [ 대표자 ○ ○ ○ 인 ]  
                  [ 후보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적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3.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 성별·여권번호”를 “주소”란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4.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이라 적습니다.

**붙임 51**

[별지 제22호서식의(다), 준용]

**위성방송연설원교체신고서**

1. 위성방송시설명 :
2. 이 용 일 시 :
3. 위성방송 연설원 교체상황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비 고
교 체 전					
교 체 후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위성방송연설원을 교체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신 청 인    [            ○            ○            당    인 ]  
                  [ 대표 자    ○    ○    ○    인 ]  
                  [ 후 보 자    ○    ○    ○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위성방송시설명” 및 “이용일시”란은 교체전의 위성방송연설원이 이용하려던 것을 말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3.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 성별·여권번호”를 “주소”란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붙임 52**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가)]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기호 :       )

(1면) 후보자 정보
○ 대통령선거 : 별지 제17호 서식의(다)에 따라 후보자정보를 기재합니다.
(2면)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정견·공약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 : 출력된 원고와 그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9호의12서식의(나)]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 ◆ 이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원고에 의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순서)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 ◆ 다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자료는 해당 정당·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만든 것이므로 원고를 제출한 정당·후보자의 정보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 : 1. 정당·후보자가 정보자료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원고서식 중 1면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작성하며, 2면은 “정당·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로 작성합니다.
2. 정당·후보자별 정보자료는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라 첨부합니다.

**붙임 54**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b>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b>	
선거비용제한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p>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선거 후보자 ○ ○ ○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인</p> <p><b>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b></p>	
<p>주 : 1.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p> <p>2. 회계책임자의 변경시 선거비용제한액에서 전임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약정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p> <p>3.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약정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정당의 대표자와 그 회계책임자가 합니다.</p>	





**붙임 57**

[별지 제50호서식]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1. 인계자

직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2. 인수자(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기관명	직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3. 인계·인수사항

인계·인수금액	인계·인수방법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12년      월      일

인 계 자      후                      보                      자      ○○○      ①인

인 수 자	{ ○○ 당 회 계 책 임 자 ○○○ ○○ ( 공 익 법 인 ) 대 표 자 ○○○ ○○ ( 사 회 복 지 시 설 ) 대 표 자 ○○○                 }	①인
		직인
		직인

- 주 1. 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2. 인계금액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발행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 4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표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은 “공병규”로 각각 약기함.

※ 재외선거 사무일정은 법 제218조의1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의 관련 절차사무에 따라 작성한 것임.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시	법§112 내지 §117
'11. 10. 14(금)부터 '13. 1. 18(금)까지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국회의원선거일 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 후 30일까지	법§218①② 규§136의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11. 12. 19(월)부터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중앙위원회에> [대통령선거]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1년부터)	법§82① 규§45④
'12. 2. 23(목)부터	전과기록[ 금고 이상의 형(법 §18①③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경력]조회<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⑧ 규§26④
'12. 3. 15(목)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후 15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4. 13(금)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대통령선거]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122, §60의3 규§26의2③ §51①②
'12. 8. 11(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법§122, §60의3 규§26의2③ §51①② 교자법§49①
'12. 8. 19(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법§122, §60의3 규§26의2③ §51①②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9. 18(화)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군의원 및 군수 선거]			법§122, §60의3 규§26의2③ §51①②
'12. 4. 22(일)부터 '13. 1. 18(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 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 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12. 4. 23(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240일부터	
'12. 8. 21(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선거일전 120일(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 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2. 8. 29(수)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 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 부터	법§60의2①
'12. 9. 28(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 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법§60의2②
	교육경력 등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 규칙§2
	비당원확인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교육감선거]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사<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 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지체없이	법\$61①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2③④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①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검임·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는 때에	정규법\$34①③ \$35① 정규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한 때	정규법\$34④ 정규규\$34①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 발송하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	법\$60의3①⑥ 규\$26의2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사본 제출(수회 발송한 때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까지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선거구위원회에> <b>[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b>	예비후보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12. 4. 23(월)부터 '13. 1. 18(금)까지	<b>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b>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설치·운영은 선거일전 24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규\$27의2① 정규법\$34①④ 정규규\$34①②
'12. 6. 22(금)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법\$218의5③
'12. 6. 22(금)부터 '12. 12. 19(수)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선거일전 180일(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89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90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누구든지		법\$93①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신문사 등은 제외)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신고)	법\$108③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6. 30(토)부터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법 §18③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경력]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12. 7. 21(토)까지	공관부제자신고인명부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136의3③
	재외투표용지 작성·교부 방법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 재외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국외부제자신고등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①
'12. 7. 22(일)부터 '12. 10. 20(토)까지	국외부제자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제자 신고대상자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공관부제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제자신고인명부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공관부제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공관부제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제자신고인명부 접수 후	규§136의6
'12. 8. 10(금)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상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도해양부장관	선박현황 기준일(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규§10의2②
'12. 8. 21(화)까지	선상부제자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2①
'12. 8. 21(화)부터 '12. 12. 19(수)까지	시·도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 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3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 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 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60의2
'12. 9. 19(수)까지	선상부제자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 밀리 번호, 선상부제자신고서 그 밖의 선상부제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개월까지	규§10의2③
'12. 9. 20(목)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도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 치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일(□ 후 확정 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입후보예정자	선거일전 90일(재보궐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④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9. 20(목)부터 '12. 11. 24(토)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12. 9. 20(목)부터 '12. 12. 19(수)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 이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b>의정활동 보고 금지</b>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 일까지	법§111①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광고개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 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137③ 규§60②
'12. 10. 20(토)까지	제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60일까지	규§136의19① 제외선거편람
'12. 10. 20(토)부터 '12. 12. 19(수)까지	<b>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b>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2. 10. 20(토)부터 '12. 12. 29(토)까지	<b>선거부정감시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b>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2②
	<b>중앙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b>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규§2의3①
	<b>투표관리관 위촉·운영</b>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12. 10. 20(토)부터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 방법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 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 부터)	법§82① 규§45④
'12. 10. 21(일)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 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 명부 등재)이 되어 있는 자	법§16③
'12. 10. 21(일)부터 '12. 12. 10(월)까지	제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제외투표관리관	선거일 전 59일부터 제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법§218의22③
'12. 10. 26(금)부터 '12. 11. 26(월)까지	<b>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대통령선거]</b>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부터 후보자등록마 감시까지	법§48②④ 규§19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10. 31(수)부터 '12. 11. 9(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규§136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218의9 규§136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위원회는 명부를 중앙위원회에 송부 (열람명부 작성용)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열람제공용)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시·군의 장	명부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8 규§136의9 재외선거편람
	· 재외선거인명부 등 송부 (열람제공용) <재외투표관리관에게> · 재외선거인명부 송부 (열람제공용)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위원회	명부작성 후 또는 구· 시·군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후 지체없이	
'12. 11. 7(수)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 까지	법§65⑥ 규§30⑤
'12. 11. 7(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11.10) 전 3일 까지	법§40③ 재외선거편람
'12. 11. 10(토)부터 '12. 11. 14(수)까지	·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열람용 명부비치)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구·시·군의 장이) - 공관 관할지역을 거소로 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선거권자 누구든지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선거일 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법§218의11 규§136의10
	· 재외선거인명부 등 인터넷 열람 -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중앙위원회가) -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 공관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재외투표관리관이) ※ 선거권자 누구든지 열람가능	선거권자 (본인의 정보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인터넷 열람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④ 법§42②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11. 11(일)까지	<b>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b>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법\$38④ 규\$11⑥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부재자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법\$38③ 규\$11②
'12. 11. 15(목)부터 '12. 11. 18(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11.14)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11.19) 전일까지 (선거일 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③ 법\$43②
'12. 11. 17(토)까지	<b>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b>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 까지	법\$64③, \$65①, \$66⑧
'12. 11. 19(월)까지	<b>선상부재자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부재자신고서 그 밖의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b>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선거일전 30일까지	규\$10의2③
	선박에 선상부재자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 장	선상부재자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규\$10의2④
'12. 11. 19(월)까지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부의 범위·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12. 11. 19(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218의14① 법\$71⑤ 규\$36①
'12. 11. 19(월)	<b>재외선거인명부 확정</b>	중앙위원회	선거일 전 30일	법\$218의13①
	<b>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b>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11②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즉시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들의 재외투표 소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소명부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재외선거편람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2. 11. 20(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60의3④
	<b>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b>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12. 11. 20(화)부터 '12. 11. 26(월)까지	<b>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대통령선거 외 선거]</b>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시까지	법\$48②④ 규\$19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12. 11. 21(수)부터 '12. 11. 25(일)까지	<b>선거인명부 작성</b>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b>부재자신고(선상부재자신고 포함)&lt;구·시·군의 장에게&gt;</b>	부재자신고 대상자		법\$38①②③④⑧ 규\$11①②
	<b>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b>	구·시·군의 장		법\$38⑤⑥⑦ 규\$11③⑤⑦⑧⑨
'12. 11. 21(수)부터 '12. 11. 25(일)까지	<b>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등록여부 확인</b>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③ 재외선거편람
'12. 11. 22(목)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법\$71⑥ \$218의14①
'12. 11. 22(목)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선거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71⑥
'12. 11. 23(금)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구·시·군의 장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0③, \$44② 규\$13③, \$16⑤
'12. 11. 24(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11. 25(일)까지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 까지	법\$46⑤ 규\$18④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후 지체 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 (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12. 11. 25(일)부터 '12. 11. 26(월)까지	<b>후보자등록 신청</b> <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49④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교육경력 등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b>[교육감선거]</b>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 규칙\$2
	비당원확인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b>[교육감선거]</b>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⑧,\$56① 규\$24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법\$71⑥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변경사유발생후 지체없이)	정규법\$34①③ \$35① 정규규\$32①②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 발생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 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b>피선거권 조사</b>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법§49⑧⑩ 규§20③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후	법§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법§150 규§71①②
	<b>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b>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23의2① §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법§52④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정당·후보자		법§63①④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63①④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신고시	규§21
	정당·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규§61③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판매할 당부	발간즉시	법§138의2③ 규§61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발행즉시	법§139③ 규§61③
	선거공약서 배부 신고<선거구위원회에>, 제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배부신고 : 배부일 전일까지 제출 : 배부전까지	법§66⑥ 규§31⑤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규§23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 당	사유발생시	규§22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법§67 규§32②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광고전까지	법§69⑤ 규§34②
	방송광고 실시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 영 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35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규§37②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79⑥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철폐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 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발송금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 <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해 당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선거운동을 위한 전국용 무료승차권 발급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및 무료승차권 발급신청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b>[대통령선거]</b>	후 보 자	발급받고자 하는 때	법§83① 규§46①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시	법§218의14① 법§71⑥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중앙위원회에>	정 당 후 보 자		법§218의14④ 규§136의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통상부, 공관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재외선거편람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12. 11. 26(월)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73⑤ 규§38②
'12. 11. 26(월)에	<b>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b>	구·시·군의 장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의 다음날에	법§44①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규§16①
	부재자신고서, 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규§16②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2. 11. 26(월)부터 '12. 11. 28(수)까지	<b>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b>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 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 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12. 11. 27(화)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구·시·군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46②③⑤ 규§18③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②
'12. 11. 27(화)부터 '12. 12. 18(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5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들의 대담·토론회 등 개최	각급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①②③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218의14① 규\$35①
'12. 11. 27(화)부터 '12. 12. 19(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① 규\$20⑤
'12. 11. 28(수)까지	법 제38조제4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	부재자신고마감일후 3일 까지	법\$149의2①
'12. 11. 29(목)까지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 재자신고인수 신고만료 일의 다음날까지	법\$149의2② 규\$70의2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30명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애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 재자신고인수 등 공고 일 후 2일 이내	법\$149의2④
'12. 11. 29(목)까지	<b>선거벽보 제출</b>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b>경력방송원고 송부</b> <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법\$73⑤ 규\$38②④
	<b>후보자 등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행</b> <중앙위원회에>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		법\$71⑦, \$218의14① 규\$36②
	제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투표 사무원 성명 등 공고	제외위원회	선거일 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후보자 등의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실시·순서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대통령선거]	중앙위원회	방송연설 신청서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법\$71⑧⑨ \$218의14① 규\$36③④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① 규\$29⑦, \$30①①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첨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⑥⑦, \$65①① 규\$29⑧, \$30①①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할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원고의 제공을 요청한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규§39②
	방송연설원 교체신고<중앙위원회에>·통지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 중앙위원회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 일전 2일까지	규§36⑤
'12. 11. 29(목)부터 '12. 12. 9(일)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규§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규§14
'12. 12. 1(토)까지	후보자 추가등록 신청 <중앙위원회에> [대통령선거]	정 당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 일까지(정당추천 후보 자가 사망한 때)	법§51
'12. 12. 2(일)까지	좌자형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 까지(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2. 12. 2(일)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정당·후보자		법§218의20②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선거일 전 17일까지	법§218의20④
'12. 12. 3(월)까지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 ※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용 DB 송부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법§218의18③ 규§136의17③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12. 12. 4(화)까지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218의17 규§136의15④⑤
'12. 12. 5(수)까지	좌자형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 발송<매세대에>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 투표용지와 동봉발송)	법§65⑤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12. 5(수)부터 '12. 12. 10.(월)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인등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 까지 기간 중 6일이내	법§218의17, 19, 20 규§136의15, 20, 21, 22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22 규§136의21⑦
	재외투표 등 회송 <외교통상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공관개표소 설치사유 발생보고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시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재외선거편람
	공관개표소 설치 여부 결정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 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개표소 설치 공고 및 통지 등 <정당,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공관개표소 설치를 결 정한 후 지체없이	법§218의24④ 규§136의25②
'12. 12. 6(목)까지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2. 9(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허가신청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규§70⑤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안내 <부재자신고인에게>	기관·시설의 장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규§70③⑤
'12. 12. 9(일)부터 '12. 12. 19(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선거일 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12. 12. 10(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부재자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54의2①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심사·결정·통지 <신청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49② 규§70②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부제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시·군위원회		법§148③ 규§68⑤
	<b>우편투표함 비치</b>	구·시·군위원회	부제자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제자투표용지(선상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부제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154의2① 규§78②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의2⑤
	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신고를 받은 구·시·군위원회	기표소설치일 전일까지	법§149의2⑤ 규§70의2④
'12. 12. 10(월)에	<b>선거인명부 확정</b>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의 장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규§16③④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	규§14③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 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규§86의2⑤
'12. 12. 11(화)까지	<b>부제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b>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8일까지	법§162② 규§88①
	부제자투표참관인 선정(부제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제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62③
	기관·시설안의 부제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기관·시설안의 부제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법§162②
	기관·시설안의 부제자투표참관인 선정(기관·시설안의 부제자투표 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제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62③
'12. 12. 11(화)부터 '12. 12. 14(금)까지	<b>선상투표 및 팩시밀리 전송</b>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2①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전송받은 후 지체없이	법\$158의2⑩ 규\$86의3②
'12. 12. 11(화)부터 '12. 12. 19(수)까지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법\$44②
'12. 12. 12(수)까지	<b>투표용지 모형공고</b>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법\$152① 규\$75
	부재자투표소 설비	구·시·군위원회		규\$68④
	<b>투표안내문(첨자형 포함) 발송(전단형 선거공보 동봉)</b> <매세대에> <b>[재·보궐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b>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설비	투표관리관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 까지	규\$68④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기관·시설의 장	기관·시설의 부재자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규\$70④
'12. 12. 13(목)부터 '12. 12. 14(금)까지	<b>부재자투표소 투표</b>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148①, \$155②, \$158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부터 2일 간의 기간중에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법\$148② 규\$68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법\$149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구·시·군위원회 투표관리관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법\$158②
'12. 12. 14(금)까지	<b>개표소 공고</b>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규\$95②
'12. 12. 16(일)까지	<b>투표사무원 위촉·공고</b>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 3일까지	법\$147⑨
	<b>개표사무원 위촉·공고</b>	구·시·군위원회		법\$174①②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일 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법\$218의20 ②~⑤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12. 12. 17(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12. 12. 18(화)까지	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일까지	규§14④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와 투표함 인계<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1① 규§16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⑥ 규§67의2, §128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규§95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 시·도 위원회에>	선 장		법§158의2⑧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만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①③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102③
공관개표소 설비	재외위원회	개표일 전일까지	법§218의24 규§136의2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③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시	법§151⑤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 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2⑧
선거일 [’12. 12. 19(수)]	<b>투 표</b>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 제10장
	부재자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규§96
	<b>제외투표 접수(오후 6시까지)</b>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218의23
	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후에	법§176② 규§97
	투표함 등 송부 <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①② 규§94
	<b>개 표</b>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 제11장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제외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 제11장 법§218의24,25 규§136의25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시·도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개표록 작성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및 당선인 결정 상황 보고<시·도위원회에> [ <b>대통령선거 외 선거</b> ]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규§106①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중앙위원회에> [ <b>대통령선거</b> ]	시·도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규§106①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 <b>대통령선거</b> ]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7, §188, §190, §191 규§108	
’12. 12. 19(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 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12. 12. 29(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13. 1. 2(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 <b>지방선거</b> ]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b>[지방선거]</b>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b>[지방선거]</b>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②③ 규칙§141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고등법원, 대법원에> <b>[지방선거]</b>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소청결정기간이 종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13. 1. 3(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법§57② 규§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후 15일 이내	법§49⑨
'13. 1. 8(화)까지	<b>선거비용 보전청구</b>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20일까지	법§122의2④ 규§51의3①
	<b>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마감</b>	회계책임자		정금법§40①
'13. 1. 18(금)까지	<b>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lt;관할위원회에&gt;</b> <b>[대통령선거 외 선거]</b>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b>[대통령선거 외 선거]</b>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 등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법§57② 규§25②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정당·후보자	당선인 결정후 30일 이내	법§223①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규§6
'13. 1. 28(월)까지	선상부제자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 송·수신 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박회사	선거일후 40일까지	규§86의4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중앙위원회에> [대통령선거]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4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중앙위원회에> [대통령선거]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13. 2. 4(월)이내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 제출 마감일부터 7일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 사본의 공고일 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관할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 경비 납부는 교부신청 과 동시에	정금법§42③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관할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 통지 <이의신청인에게>	관할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13. 2. 27(수)까지	선거비용 보전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시행 일정	실시 사항	실시기관(자)	기준 일	관계법조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 등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 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 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 당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 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해당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3. 6. 19(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후 6월이내	법§60②





정당 · 후보자를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

2012년 10월 인쇄  
2012년 10월 발행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TEL : 02) 503-2093

인쇄 : 동 일 인 쇄 사  
02) 2264-0464

---

